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200-01

2018. 2.

#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

-지자체 방역비용 확충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허 덕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박 성 진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진 년 (연구원)

연구참여자: 서 강 철 (연구원)



## 요 약

---

가축전염병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의 지속적인 발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축질병 발생 시 효율적인 필요비용 충당과 사육제한 이행농가 지원 등을 위한 방역재원, 특히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가축방역사업 전반에 걸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축방역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농가(가축 소유자)에게 원인 유발자 책임의 원칙과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소요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방역 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세의 부과 형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민의 수용성, 투명성,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세보다는 목적세, 목적세 중에서도 부담금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축질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에 방역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일반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 재원 확충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제어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비용 만큼(외부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인 피구세(Pigouvian Tax)를 응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은 국외 주요국에서는 ‘동물건강기금’이나 ‘가축방역호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가축소유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은 물론 신속한 보상을 통한 성실한 조기질병 신고와 방역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건강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동물건강기금’은 제품생산위원회와 네덜란드 정부 간 매 5년마다 협약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일부 재원은 EU로부터 충당하며, 평시 예방적 방역활동 비용과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가축 소유주가 지불하는 부담금(Levy)은 농장의 크기, 가축 사육마릿수, 축산물 생산량, 축종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개인의 방역 노력 정도에 다른 차등 부담은 없다.

일본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방역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 ‘가축방역호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계약한 농가가 정부에서 정하는 부담금(호조금)을 지자체 지정단체인 현공모단체 또는 현단체에 납부하고, 질병 발생 시 계약한 농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가축방역 및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축산농가의 경영재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가축방역호조금제도’ 이외에 방역비용 부족 시 마을단위(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기준 총 90개의 부담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가축방역 부담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15개의 부담금을 집중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부과·징수는 지자체에서, 관리는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축방역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역재원 마련을 위한 효율 추정은 지자체 방역 비용만을 고려하여 진행하였고, 축종별 방역비용 효율은 가금류와 우제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① 평시 방역 비용만 고려, ② 살처분 보상금만 고려, ③ 평시방역비용을 제외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질병 발병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고려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시나리오는 지방비의 50% 부담과 25% 부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평시 방역비용에 대한 부담금 규모나 마리당 분담액, 가구당 분담액에 대해서는 축종별로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분석과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는 축종에 따라 수용여부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제류의 경우에는 지방비 분담 비중에 관계없이 일정부분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가금류, 특히 산란계와 오리의 경우에는 부담액 규모나 마리당 분담액, 가구당 분담액이 지방비 분담 비중에 관계없이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자체 방역비용 재원 확충을 위한 방역부담금 운용은 각 축종별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산자와 이해 관계자의 방역비용 부담에 대한 접근은 평시방역,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보상금을 포함한 제반비용과 축종별 주요 질병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단기, 중·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즉 여건조성단계에서 1)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2) 부담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조항 확보, 3) 이용 가능한 통계 조사 보완, 4) 기존 통계 조사 발표 체계 재정비, 5) 전담기관 별도 설립 시 별도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구비 및 예산 확보 및 설립 추진, 6) 부담금 기본법에 맞도록 법률체계 정비 및 준비, 7) 사육규모 계층별 부과 방식 채택의 경우, 사육단계별 계층 구분 기준 마련 필요, 8)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부담금 산출 기준 매뉴얼이 구비되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9) 농가 규모 계층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는 경우, 부과금 산출을 위해 현재의 통계조사 및 발표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축방역부담금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희망자에 한한 계약체결 방식보다는 의무가입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 1) 징수·운영·기금관리 주체 선정, 2) 운영주체 설립 또는 지정 및 기금 귀속 회계 수립, 3) 농가 또는 가축소유자, 징수 대상 관련 업체 등 기금조성 대상 범위(납부의무대상자 범위) 결정, 4) 부과 대상 사육규모 및 질병의 범위 결정, 5) 축종별 기금 분리 운영체계 구축, 6) 각 주체의 전문성 확보, 7) 가축방역부담금 운영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 8) 부담금 산정 기준 마련, 9) 부담금의 사용용도 및 감면 요건 결정, 10) 자조금을 통한 거출방법 선택 시

모든 가축에 대한 자조금 설치, 11)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 강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여건 상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므로, 납부 대상자들의 반발 정도를 고려하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계를 이용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세적 성격의 징수라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부 대상자들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 차 례

---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3
3.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 4

### 제2장 방역부담금 관련 해외 사례

1. 네덜란드 ..... 5
2. 일본 ..... 17
3. 기타 국가 방역부담금 운용 기관 ..... 35
4. 국외사례 시사점 ..... 37

### 제3장 방역자원 확충 방법

1. 국내 방역비 지출 현황 ..... 41
2. 방역비 부담체계 전환의 필요성 ..... 44
3. 방역비 부담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45
4. 부담금의 특성 ..... 49
5. 부담금의 현황과 기능 및 도입절차 ..... 51

### 제4장 국내 유사 부담금 운영사례 검토

1. 국내 부담금 제도 현황 ..... 57
2. 검토 대상 부담금 제도의 선정 및 현황 ..... 61
3. 시사점 ..... 65

### 제5장 축종별 요율의 산출

1. 요율추정 방법 및 가정 ..... 67
2. 시나리오별 요율 추정 결과 ..... 69
3. 분석결과 시사점 ..... 76



**제6장 방역 부담금 도입 시 운영방안**

- 1. 방역부담금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 79
- 2. 방역부담금제도 도입 방안 ..... 84
- 3. 가축방역 부담금 제도 도입 로드맵 ..... 111

**제7장 요약 및 제언 ..... 115**

**부록 1: 검토 대상 유사 부담금별 운용 현황 ..... 127**

**참고 문헌 ..... 145**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네덜란드의 보상 체계 명칭 및 법적 토대 .....	6
<표 2-2>	네덜란드 동물건강기금의 제도적 체계 .....	6
<표 2-3>	가금류 소유자 부담금 산정 방법 예시 .....	11
<표 2-4>	가치 평가 방법과 조건 .....	14
<표 2-5>	동물건강기금에 대한 분담금 한도 사례(2010-2014) .....	16
<표 2-6>	보상 실행 및 적용범위 .....	16
<표 2-7>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징수 및 운영, 관리주체 .....	20
<표 2-8>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2 .....	22
<표 2-9>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사업 .....	23
<표 2-10>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4 .....	24
<표 2-11>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5 .....	27
<표 2-12>	일본 가축방역호조사업의 납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	28
<표 2-13>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사용 용도 .....	30
<표 2-14>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징수 및 사용 절차 .....	32
<표 2-15>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관련 법률 .....	33

### 제3장

<표 3-1>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급 현황(2011~2017년) .....	42
<표 3-2>	AI 관련 예산 지출 총계(국비) .....	43
<표 3-3>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 수습 소요예산(국비) .....	44
<표 3-4>	조세·목적세와 부담금의 차이 .....	50
<표 3-5>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	55

### 제4장

<표 4-1>	2016년 기준 부처별 운용 부담금 수 .....	58
<표 4-2>	연도별 운용 부담금 수 .....	58
<표 4-3>	2016년 기준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	59
<표 4-4>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 내역 .....	59

<표 4-5>	부처별 부담금 귀속 내역 .....	60
<표 4-6>	방역부담금 관련 부처별 유사 부담금 선정 현황 .....	61
<표 4-7>	부담금 별 부과 및 징수 기관 현황 .....	62
<표 4-8>	부담금 별 귀속 주체 및 관리 계정 현황 .....	63
<표 4-9>	부담금 별 부과대상 현황 .....	64
<표 4-10>	국내 부담금별 운영 현황 .....	65

## 제5장

<표 5-1>	축종별 비중 추정 결과 .....	68
<표 5-2>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	70
<표 5-3>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	71
<표 5-4>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	72
<표 5-5>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	73
<표 5-6>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과 제반비용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	74
<표 5-7>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과 제반비용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	75

## 제6장

<표 6-1>	가축질병 방역비 부과·징수 주체별 장단점 .....	82
<표 6-2>	방역 부담금 도입 시 운영방안(안) .....	82
<표 6-3>	가축방역부담금 운영기관 지정이 가능한 조직의 장단점 비교 ·	89
<표 6-4>	축종별 부담금 부과방법 .....	99
<표 6-5>	부담금 부과 기준별 장·단점 .....	101
<표 6-6>	부담금 부과 기준별 적용방법 및 보완사항 .....	102
<표 6-7>	가축방역부담금 주체별 대안의 부담금 운용방식 카테고리별 비교 ·	107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1> 네덜란드의 동물건강기금 운영 체계 .....	8
<그림 2-2>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17
<그림 2-3> 가축방역호조금 제도의 체계 .....	19
<그림 2-4> 스페인의 Agroseguro 운영 체계 .....	35
<그림 2-5> 독일의 동물질병기금 운영 체계 .....	36

### 제3장

<그림 3-1> 세금 부과 효과 .....	46
<그림 3-2> 공적 대응 피구세 .....	48
<그림 3-3>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의 절차 .....	54

### 제6장

<그림 6-1> I안의 부담금 관리체계도 .....	90
<그림 6-2> II안의 부담금 관리체계도 .....	93
<그림 6-3> 가축방역부담금 도입 로드맵 .....	113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방역 및 매몰비용 등을 지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가축방역비용 중 지방정부의 부담 비중은 살처분 농가보상금의 경우 20%,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30%로 정해져 있으며, 매몰비용은 100% 지방에서 부담하여야 함.  
→ 정부가 100% 지원하는 보상체계에서 산업계가 공동 책임지는 보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축세 폐지 이후 축산업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고, 가축질병, 환경오염 등 안티축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국민들은 축산 농가에 대하여 질병 및 환경오염 관리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농가의 방역활동 부족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원인유발자 책임의 원칙(Pollutant Pay Principle)”과 가축질

병 방역의 수혜자(수익자, 이하 수혜자와 수익자 병행 사용)인 가축 소유자에게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에 입각하여 방역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방역비용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재원을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소유하여 사육하는 농가와 위탁사육의 경우 위탁한 농가 또는 위탁한 계열업체)에서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가축소유자의 자발적인 방역활동과 방역의 효율성 극대화 추구
- 현재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활동 등의 비용을 지방정부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겨울철 가금류 휴업보상제 실시 및 방역세 징수를 통해 휴업보상금 및 방역비용 충당을 건의한 바 있음.
- 해외에서는 주로 민간합동 비용분담방식을 통해 가축 질병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방역부담금을 비롯해 방역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네덜란드는 정부 직접 지원 대신 민관합동 매칭펀드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사전 방역비용, 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및 백신 비용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 직접 지원과 기금 및 보험제도를 병행하여 농가의 살처분 비용 및 경영재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스페인은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가축질병 피해를 보상하나, 보험업체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

## 1.2. 연구 목적

- 가축질병 발생 시 필요비용 충당과 사육제한 이행농가 지원 등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역시설 개

선, 예찰, 소독,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가축방역사업 전반에 걸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방역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한편, 방역부담금을 도입신설하기 위해서는 방역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내에 방역부담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가축방역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 특별회계” 설치를 필요로 함.

## 2. 연구 내용과 방법

-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함.
- ‘방역부담금 도입 방안’ 조사
  - 제도 도입 필요성, 규제의 타당성 검토 등
  - ‘방역 부담금’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 및 해결사항
  - 유사법률\*의 부담금 징수 방법·절차 및 기 도입·추진 사례 조사
    - \* 부담금관리기본법률에서는 환경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등 94개 항목에 대해 관련단체(기관)으로부터 부담금 징수 중인 상황
  - ‘방역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및 추진방향 제시
    - \* 부담금 징수주체(국가, 지자체 등), 부과요건, 납부액 산정기준 및 방법, 부과요율, 감면요건, 부담금 사용용도 및 징수·사용절차, 부담금 기금 관리·운용주체 선정, 부담금 징수와 관련 법률 등 개정 필요사항 등
    - \* 각종 부담금 제도 관련 문헌 검토, 국내 부담금 제도에 관한 인터넷 조사, ‘방역 부담금’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 \* 국내외 부담금 관련 전문가 조사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면담 조사



\* 부담금 요율 산정을 위한 비용 분석 진행

- 주요 해외 국가의 축산업계 방역 부담금 재원 확충 제도 등 현황 조사로 기타 부담 방안 마련
  - 유럽 국가 및 일본의 방역재원 마련 주요사례, 방법 등 조사
  - \* 국외 부담금 제도에 관한 인터넷 조사

### 3.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 부족한 지자체의 방역예산을 확충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작업 수행이 가능해 짐.
- 질병 발생원인 농가에게 방역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농가들의 모럴헤저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게 됨. 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활동 및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방역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가(가축소유자)의 조기 신고와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활동은 결국 농가의 방역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에, 질병 발생 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평시방역 모니터링,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장비,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결과적으로 방역부담금 제도에 따른 방역비 충당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예산 배분을 가능하게 함. 또한, 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선진적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제2장

---

### 방역부담금 관련 해외 사례

#### 1. 네덜란드

##### 1.1. 동물건강기금의 제도적 체계

- 네덜란드 정부는 1992년 9월 24일 「동물건강복지법(The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sup>1</sup>」을 제정하였음. 동물건강기금은 동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3개 품목 생산자위원회(Production Board)간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축 사육 중에 발생하는 동물 질병을 예방 및 퇴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동물건강기금(Animal Health Funds)을 활용하여 동물 질병 예방 및 퇴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1 윤리적 관점에서 비롯된 동물의 건강 및 복지에 관한 규칙의 필요성,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수출, 네덜란드 육종 제품의 순도에 대한 규칙을 제공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함.

〈표 2-1〉 네덜란드의 보상 체계 명칭 및 법적 토대

명칭	법적 근거
동물 건강 기금 (Animal Health Funds)	The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 the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sector-representing Product Boards

자료: OECD(2012).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 동물건강복지법은 기금의 법적 기초를 제공하고, 정부와 3개 품목 생산위원회<sup>2</sup> 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지불 비용의 규모를 설정함. 생산자위원회에는 품목 생산농가부터 유통단계까지 가치사슬 상의 관계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음.

〈표 2-2〉 네덜란드 동물건강기금의 제도적 체계

체계 관리			주요 이해 관계자
개요	유형	업계 의사결정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3개 생산자 위원회 간의 5개년 협약</li> <li>·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금인 동물건강기금을 통하여 보상 수행</li> <li>· 담당부처는 기금의 일상 관리와 관련 가축 질병 예방 및 통제 정책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li> </ul>	공공-민간 분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자연 및 식품부</li> <li>· 가축 및 육류, 가금 및 계란, 유제품 생산자 위원회</li> <li>· 가축 소유자</li> </ul>

자료: OECD(2012).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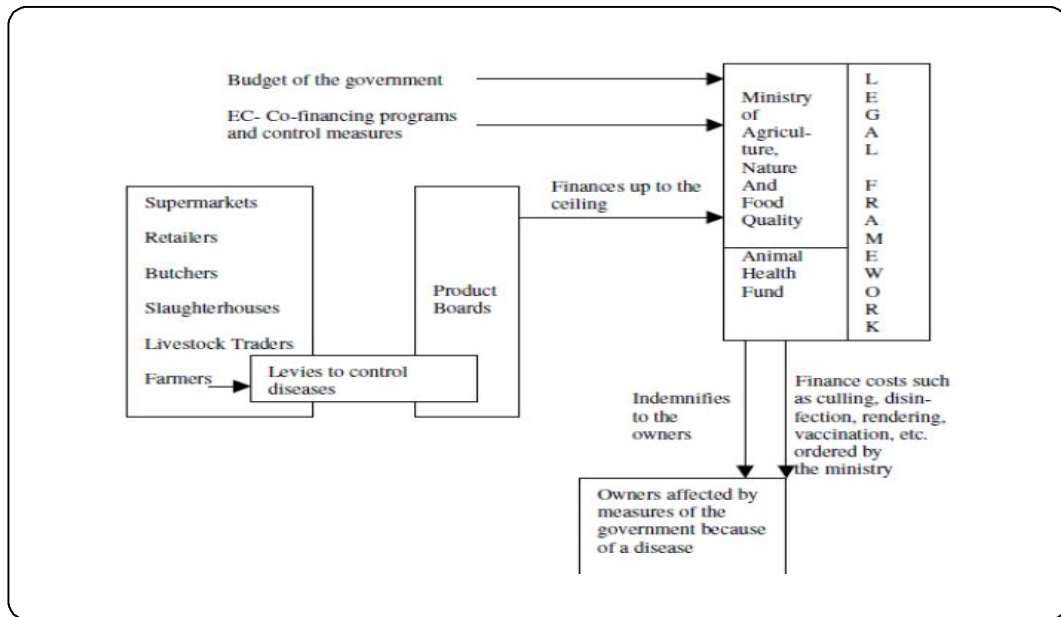
## 1.2. 동물건강기금의 운영체계

- 동물건강기금의 재원은 크게 생산자위원회, 네덜란드 정부, EU 3곳으로 구성됨.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가장 먼저 각종 방역비용과 보상액 등을 지불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위원회에게 필요한 비용 부담을 추후 청구함.

<sup>2</sup> 가축 및 육류(Livestock and Meat), 가금 및 계란(Poultry and Egg), 낙농제품(Dairy Products)

- 이후 생산위원회는 기존 기금을 이용해서 정부가 청구한 비용을 지불함. 만약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생산위원회에 속한 농가의 분담금 (levy)을 인상하는 형태로 가축소유주에게 추가비용을 전가함.
- 가축질병 발생 시 생산자위원회가 기금에서 지원해야하는 금액상한선은 축종과 질병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음. 금액 상한선은 매 5년마다 정부와 생산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재설정됨.
- 만약 합의된 금액상한액 이상의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해당 초과비용을 EU와 함께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단, 반려동물 (애완용 돼지, 가금 등)의 가축전염병 감염 및 예방적 살처분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과 보상금액은 모두 정부가 부담함.
- 매 5년마다 정부와 생산위원회가 비용분담 관련 협의를 할 때, 평시 예방적 방역활동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비용을 구분해서 설정하고 있음.
- 평시 예방적 방역활동의 경우 정부와 업계가 비용을 50:50으로 부담하고 있음.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생산위원회가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상한도액 내에서 생산위원회가 전액 지불하지만,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EU가 지원하고 있음.
  -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후 부담금 인상을 통하여 조달함.

〈그림 2-1〉 네덜란드의 동물건강기금 운영 체계



자료: "Managing animal diseases risk: incentives and governance of external effects", OECD Workshop on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Paris, 2010.

## 1.2. 징수 및 운영주체

- 동물건강기금의 징수주체는 기업지원총국(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sup>3</sup>임. 기업지원총국은 양, 염소, 가금류(산란계, 육계, 칠면조, 오리), 돼지,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해당 농가가 납부해야 하는 동물건강부과금을 고지하고, 해당 금액을 농가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기업지원총국(RVO.nl)은 농가에게 동물건강부과금을 부과할 때, 해당 농가가 사육하는 축종,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마릿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함.

3 기업지원총국은 경제 및 기후부의 일부로서 농업·자연 및 식품부, 외무부 및 왕국 관계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부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동물건강기금 주요 이해관계자로서는 농업·자연 및 식품부, 각 품목 체인을 대표하는 가축 및 육류, 가금 및 계란, 유제품 등의 3개 생산자위원회, 가축 소유자가 있음.
- 이중 농업·자연 및 식품부에서 기금의 일일 관리와 해당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 1.3. 부과 요건

-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가축을 사육하는 가축 소유자에 동물건강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가축 소유주가 지불하는 부담금(levy)은 농장의 크기, 가축 마릿수 규모, 축산물 생산량, 축종 등에 의해서 결정됨.
- 돼지, 양과 염소, 가금류(육계, 산란계, 오리, 칠면조 등) 사육하는 농가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인. 돼지의 경우 연 평균 5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양과 염소의 경우 연 평균 26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가금류의 경우 연 평균 2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의 비용분담 방식 보상체계를 업계의 방역활동 증진이나 질병 발생 억제 효과보다는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가축소유자들은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지불해야하고, 만약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피해규모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부담금액도 함께 커짐. 때문에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1.4. 산정 기준 및 방법

- 동물건강기금의 부담금 산정은 특정 가축 소유자가 사육하는 축종, 사육 마릿수, 생산량 등에 따라 결정됨. 이 때문에 가축 소유자는 정확한 정보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 1.4.1. 양과 염소

- 전년도에 연평균 26 마리 이상의 양이나 염소를 사육한 농가의 경우 동물건강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부담금은 양이나 염소 1마리당 부과되며,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양과 염소의 사육두수는 I&R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함.
- 동물건강기금은 특정 시점(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에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이나 염소의 평균 사육두수를 해당 연도 해당 농가의 사육두수로 봄.

### 1.4.2. 가금류

- 전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250 마리 이상의 가금류(육계, 산란계, 칠면조, 오리)를 사육한 농가의 경우 동물건강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가금류의 경우 각 품목 분류별로 마리 당 부과되는 요율이 다름.
- 부담금을 부과할 때 가금류의 회전율 등을 고려하고,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가금류의 사육두수는 Avined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부담금 산정은 KIP-system(Koppel Information System Poultry)에 근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함.

〈표 2-3〉 가금류 소유자 부담금 산정 방법 예시

사례 1. 육계 농가	○ 6주 마다 10만 마리를 사육하고, 8회전을 하는 육계 농가의 경우
	- 부과금액 : 사육 마릿수×회전율/365×부과요일
	- 부과금액 : $100,000 \times 39 / 365 \times 0.024393 = 260.63$ - 8회전 설정에 따른 연간 부담금: $8 \times 260.63 = 2,085$ 유로
사례 2. 산란계 농가	○ 10만 마리를 사육할 경우
	- 부과금액 = 사육 마릿수×회전율/365×부과요일
	- 회전율은 부과된 연도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
	- 부과일을 7월 5일로 설정할 경우 회전율은 7월 5일부터 12월 31까지의 일수인 180일로 설정
	- 부과금액= $100,000 \times 180 / 365 \times 0.1105014 = 5,671.92$ - 산란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육되기 때문에 연간 부담금: $100,000 \times 365 / 365 \times 0.1105014 = 11,501$ 유로

자료: 기업지원총국(<https://www.rvo.nl/onderwerpen/agrarisch-onder nemen/dieren/dierziektepreventie/diergezondheidsfonds/pluimvee>). 2018.02.27.

### 1.4.3. 돼지

- 2018년 1월부터 연평균 5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동물건강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2018년 이전까지는 생산자위원회(the former product board)의 적립금(reserves)을 활용하여 돼지 사육농가가 납부해야 하는 동물건강기금 부담금을 충당하였음. 하지만, 해당 적립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돼지 사육농가가 동물건강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됨.
- 부담금은 돼지 1마리당 부과되며,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돼지의 사육 두수는 I&R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함.

### 1.4.4. 소

- 부담금은 소 1마리당 부과되며,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소의 사육 두수는 I&R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함.



## 1.5. 부과 요율

- 양이나 염소 1마리당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7년 기준 1.03유로였으며, 2018년의 경우 2017년 보다 상승한 1.2275 유로임. 가금류의 경우 각 품목 분류별로 각각 상이한 요율이 적용됨<sup>4</sup>.
- 2018년 기준 돼지 1마리당 부과되는 부담금은 0.1967유로임.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동물건강기금이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돼지열병(CSF)과 같은 전염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와 돼지 사육 농가를 모니터링하는 비용
  - 2)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구제역(FMD)용 백신 구입과 같이 전염성 가축질병을 박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비용
  - 3) 위기 발생 시 동물건강기금이 활용할 총당금 적립을 위한 비용과 사업비
- 소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잔여기금이 많아 동물건강기금의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돼지의 경우처럼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됨.

## 1.6. 적용 규칙 및 감면 요건

- 가축 소유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정부에 질병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생 기준을 충족 또는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상금이 축소 될 수 있음.
-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가축, 가축이 생산한 제품, 물품 등을 인계 및 처분, 살처분해야 할 경우, 독립평가사(independent valuer)가 이에

<sup>4</sup> <https://www.rvo.nl/sites/default/files/2017/11/Overzicht-omloopsnelheden-pluimvee.pdf> 참조.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함.

- 독립평가사는 가축질병의 확진 또는 의심 사항이 접수된 후 24시간 내에, 해당 가축, 가축이 생산한 제품, 물품이 제거되기 전에 가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독립평가사의 법적근거, 소속, 비용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동물보건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음.
-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농가 손해 평가는 장관이 임명한 전문가가 수행함(제 88조제2항). 해당 전문가는 수의사로 구성되고, 수의사 출장비는 동물건강기금에서 지급함.
- 수의 검사 시 건강한 가축은 시장 가치 100%, 환축은 50%, 사축은 0%를 적용함. 이를 바탕으로 독립평가사는 해당 가축이나 가축이 생산한 제품, 물품이 지닌 가치와 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함.
- 또한 가치평가는 직접적인 피해에만 국한되며, 해당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간접적인 피해(possible consequential damage of the measures, such as loss of turnover and vacancy)는 고려하지 않음.
- 가치평가사는 해당 가축질병이 발생(outbreak)하기 전의 시장 가치를 해당 가축, 가축이 생산한 제품, 물품의 가치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함.
- 가치평가사는 와게닝겐 대학 LEI 연구소가 만든 동물/제품 가치표를 시장 가치 평가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가치평가사들이 제출한 기준표는 관련 기관(네덜란드 당국, 네덜란드 기업 지원 총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the Agricultural Economic Institute)에 의해 취합됨.

- 초기 평가에 대해서는 가축 소유자나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3인의 전문가 팀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짐.

〈표 2-4〉 가치 평가 방법과 조건

보상 금액 결정				조건 제한
평가	평가 규칙	평가 날짜	이의 제기	
시장 가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제품가치표를 평가자의 지침으로 사용</li> <li>- 동물의 범주, 연령 및 구매가격 등 고려</li> <li>· 수의 검사 시 건강한 동물은 100% 시장 가치로 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통제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날짜</li> </ul>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최대한 빨리(법적 요구 사항)</li> <li>· 농업인이 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을 감축함</li> <li>· 검사 중 눈에 띄게 아픈 동물은 50%, 죽은 동물은 0% 수준에서 보상</li> </ul>

자료: OECD(2012).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 가축질병 발생의 직접적 피해 이외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피해는 기금으로 보상하지 않음. 이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 수립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간접적 피해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임.
- 간접적 피해보상을 위한 민간 보험제도의 적용 가능성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하지만, 주로 가축 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된 검토 대상임.
- 개별 농장의 방역에 대한 노력 정도 등에 의해서 부담금이 차등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의 방역 노력 정도에 따른 차등 부담과 그 외에 다른 조건에 의한 감면은 없음.
-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 모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업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등적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 1.7. 사용용도 및 징수·사용절차

- 동물건강기금은 오염원 부담(지급),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가장 많이 지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부과를 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비용을 사용함.
  - 1) 동물보건복지법(GWWD)에 명시된 동물질병의 통제
  - 2) 전염성 동물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
  - 3) 전염성 동물질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동물의 확보 및 검사
  - 4) 전염성 질병이 발병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동물 처분에 대한 보상
  - 5) 모니터링 및 선별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관련 생산자 위원회에 분담 한도액까지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보상 및 질병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불하고, 이후 해당 생산자 위원회에서 동물건강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대응함.
  
- 동물건강기금에 대한 해당 부문의 재정적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분담금을 가축 소유자에게 부과함.
  
- 질병 발생 시 동물건강기금이 지출한 비용은 생산자 위원회, 네덜란드 정부 및 유럽연합에서 조달됨. 질병과 부문에 따라 다양한 축산업 분담금 한도는 정부와 3개 생산자 위원회 간에 매 5년마다 개최되는 협상에서 결정됨.
  
- 매년 초에 전년 특정 농가가 I&R 시스템이나 Avined 및 KIP 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가축사육실적과 매년 정해놓은 축종별 효율을 곱한 선 징수액을 가축 소유자에게 고지함.
  
- 각 가축 소유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당해연도가 종료된 이후 실제 해당 농가가 사육한 가축사육실적을 바탕으로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함.

〈표 2-5〉 동물건강기금에 대한 분담금 한도 사례(2010-2014)

축종	책임 생산자 위원회	최대 분담금	구체적 배정
소 (젖소/육우)	유제품 위원회	1,950만 유로	해당사항 없음
돼지	가축 및 육류	6,800만 유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돼지 수포질병의 모니터링과 통제만을 위하여 4,200만 유로 배정
가금	가금 및 계란	2,600만 유로	뉴캐슬 질병의 감시와 통제만을 위하여 200만 유로 배정
양 및 염소	가축 및 육류	452만 유로	스크래피 모니터링 및 통제만을 위하여 135만 유로 배정

자료: OECD(2012).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 원칙적으로 보상절차는 여러 종류의 질병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 하지만, 각 생산자 위원회가 다양한 관련 축종 및 질병에 근거한 다른 분담 한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질병 유형 간에는 차별화가 있다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인수공통전염병과 동물 생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따라 보상 절차 차별을 두지 않음. 각 생산자 위원회에서 해당 부문 축종에 대하여 별도의 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2-6〉 보상 실행 및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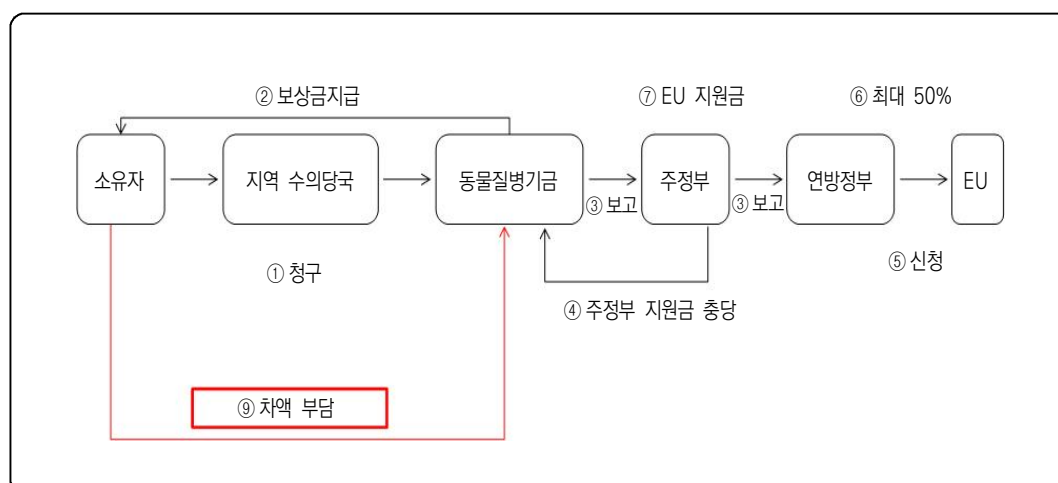
적용 범위 개요	소규모농가 가능 여부	간접 손해 보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태 동물 및 손실 제품</li> <li>· 통제조치로 인한 직접 손실</li> <li>- 실험실 비용, 동물 운송 비용 및 소득 비용 포함</li> </ul>	가능	제공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적 손실은 민간 부문의 책임'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li> <li>· 그러나 정부는 민간 부문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간접적 손실에 대한 가능성 있는 계획 개발 지원</li> </ul>

자료: OECD(2012).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 질병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1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보상금 지급은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정부는 살처분/도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 질병 발병 후, 전염병 비용이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유럽연합의 공동자금 조달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상환함. 질병이 발생한 축종의 기금 보유 한도액이 부족할 경우, 다른 축종의 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융자형식으로 대출하여 운영하기도 함.

〈그림 2-2〉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자료: OECD(2012).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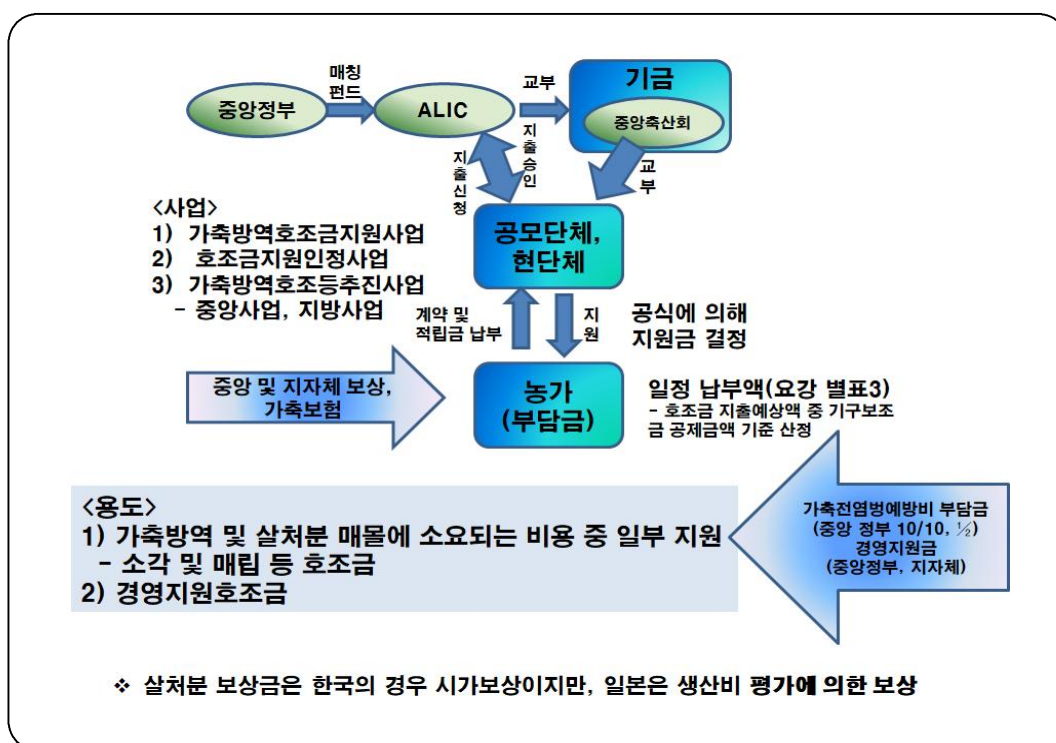
## 2. 일본

### 2.1.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家畜防疫互助制度) 개요

-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중앙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방역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정책 중 하나임. 즉, 일본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시가로 보상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생산비를 평가하여 보상함. 이 경우 농가가 경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할 수 밖에 없음. 이에 가축방역호조금제도와 가금에 한하여 가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계약한 농가에 한하여 보상하는 제도임. 농가가 정부에서 정하는 부담금(호조금)을 지자체 지정단체(현공모단체 또는 현단체라 함)에 납부함. 농가가 납부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이하 ALIC)에 같은 금액을 매칭펀드(50 : 50)하며, 이로 마련된 기금은 중앙축산회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체제임.
- 이 기금은 가축방역 및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재개 자금의 일부로 사용(경영지원호조금)하게 됨. 이를 위해 가축방역호조금제도에서는 가축방역호조금 지원사업과 가축방역호조금인정사업 그리고 가축방역호조 등 추진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농가는 정부에서 정한 부담금을 지자체의 공모단체 또는 현단체와 계약하여 납부함. 이에 대한 내용은 중앙의 ALIC에 보고되고, ALIC는 중앙정부에 매칭펀드를 요청하여 중앙축산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적립됨.
- 만약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계약된 농가에서 살처분이 실시되면, 계약된 농가에 대해 지자체의 공모단체 또는 현단체가 ALIC에 지출 신청을 하게 됨. ALIC는 이를 심의하여 지출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침. 지출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금액은 중앙축산회로부터 조달되는 구조임.

〈그림 2-3〉 가축방역호조금 제도의 체계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금 요강(www.maff.go.kr)을 참고하여 자체 작성

## 2.2.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관련 주체

- 이처럼,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징수주체와 운영주체 그리고 기금관리주체가 서로 다름. 징수주체는 공모단체 또는 현단체로 지자체의 장이 되며,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ALIC이지만, 기금의 관리는 중앙축산회에서 담당함.
-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각 관련 농가 및 단체는 5년간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표 2-7〉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징수 및 운영, 관리주체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징수주체	공모단체 또는 지자체장. 농축산업진흥기구(ALIC)에서 1/2 지원 법 제 2의 1 <sup>5</sup> 및 2의 (1)의 사업 <sup>6</sup> 에 대해서는 공모단체, 제 2의 2의 (2)의 사업 <sup>7</sup> 에 대해서는 공모단체가 제 2의 1의 사업 <sup>8</sup> 에 실시예 보조하는 도도부현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현 단체) 선정
기금관리주체	기금 사용주체는 농축산업진흥기구 이사장, 기금 관리주체는 중앙축산회
운영관리주체	공모단체 또는 지자체장 사업의 위탁,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이사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 가능함. 현 단체는 제 2의 사업 <sup>9</sup> 일부를 위탁 가능
사업실시 기간	사업실시기간: 2015년~2017년
비고	장부 등의 정비 보관: 5년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2.3. 일본가축방역호조제도의 사업

-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에는 가축방역호조금지원사업과 호조금지원인정사업이 있음. 각 사업들은 중앙추진사업과 지방추진사업이 있음.
- 호조금지원사업은 현공모단체 또는 현단체와 가축방역호조금에 대한 지원을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됨. 가축 등의 이동제한 등이 실시된 구역이나 해당 구역 외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4조 제 3항의 규정<sup>10</sup>에 따라, 가축의

5 가축방역 호조사업

6 가축방역호조금등추진사업 중 중앙추진사업

7 가축방역호조금등추진사업 중 지방추진사업

8 가축방역 호조사업

9 가축방역호조등추진사업

10 가축방역원은가축전염병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동거하고 있어 또는 기타 이유로 환축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의사환축 제외)의 소유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가축을 일정 구역 외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시를 할 수 있음.

격리를 지시한 구역이 해제된 농장의 경영재개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조금을 지원함.

- 호조금지원인정사업은 지원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호조금의 지원 단가를 인정하는 호조금 지원 인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됨. 이 때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보조하는 사업임.
- 지자체 내에 적당한 현 단체가 없는 경우, 호조금 지원 인정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현지 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가축방역호조 등 추진사업에는 (1) 중앙추진사업과 (2) 지자체 추진사업이 있음. (1) 중앙추진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공모단체는 중앙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보급, 주도 및 연락규정 등을 실시하게 됨.
- 지방추진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현 단체는 (1) 의 사업 즉, 중앙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보급, 주도 및 연락조정 등을 실시함.
- 이 때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강 별표 2에서 정함. 요강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조대상경비 및 보조율에 따라 공모단체 및 현 단체가 제 2의 사업<sup>11</sup>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보조함.
- 지자체의 공모단체 또는 현단체는 독립행정법인인 ALIC의 이사장에게 인정 및 지출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음. 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11 가축방역호조 등 추진사업

〈표 2-8〉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2

사업 종류	보조대상 경비	보조율
가축방역 호조사업	1. 공모단체가 지원대상 질병 발생시 호조사업에 근거 호조금을 지원하는 데 드는 경비	1/2 이내, 단, 1지원대상 가축당 지원 상한 단가는 별표 4에 따름
	2. 공모단체가 현지조사 및 호조금지원액인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정액
	3. 현단체가 현지조사 및 호조금지원액인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정액
가축방역호조 등 추진사업	공모단체가 중앙추진회의 개최, 사업의 보급, 지도 및 연락조정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정액
	현단체가 중앙추진회의 개최, 사업의 보급, 지도 및 연락조정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정액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사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우선 사업참가자는 돼지(멧돼지 포함) 및 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업참가자의 구분에 따라 계약구분을 설정함. 즉,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인 이상인 양돈업 또는 양계업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 또는 회사(기업형)임. 기업형 이외의 자는 가족형으로 구분됨.
- 계약 기간 중 매년 1회 한정으로 계약구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대상농장은 지원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동제한지역구역 외에 소재하여야 함.
- 계약대상두수는 가축의 종류 및 구분마다 사업실시기간의 계약대상농장마다 예상두수로 함. 예상두수 등을 변경할 경우 계약대상가축 예상치를 변경함.

〈표 2-9〉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사업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는 가축방역호조금지원사업과 호조금지원인정사업으로 구분. 중앙추진사업과 지방추진사업이 있음.</li> <li>1. 호조금지원사업: 공모단체 또는 현단체와 가축방역호조금 지원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 등의 이동제한 등이 실시된 구역 및 해당구역 외에서는 가전법 제 1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격리를 지시한 구역이 해제된 농장의 경영재개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조금을 지원함.</li> </ul> </li> <li>2. 호조금지원인정사업: 지원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호조금의 지원단가를 인정하는 호조금지원 인정위원회의 개최 및 이에 필요한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보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적당한 현 단체가 없는 경우, 호조금 지원 인정 위원회의 개최 및 이에 필요한 현지 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li> </ul> </li> <li>○ 가축방역호조 등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단체는 중앙추진회의의 개최, 사업의 보급, 주도 및 연락규정 등을 실시</li> </ul> </li> <li>(2) 지방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단체는 (1)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회의의 개최, 사업의 보급, 주도 및 연락조정 등을 실시</li> <li>- 요강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조대상경비 및 보조율에 따라 공모단체 및 현 단체가 제 2의 사업(가축방역호조등 추진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보조</li> </ul> </li> </ul> </li> <li>○ 독립행정법인 ALIC 이사장에게 인정 및 자출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음. 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li> </ul>
사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가자: 돼지(멧돼지 포함) 및 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업참가자의 구분에 따라 계약구분을 설정함.</li> <li>-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인 이상의 양돈업 또는 양계업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 또는 회사(기업형)</li> <li>- 기업형 이외의 자(가족형)</li> <li>- 계약 기간 중 매년 1회를 한정으로 하여 계약구분을 갱신할 수 있음.</li> <li>- 계약대상농장: 지원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동제한지역구역 외에 소재하여야 함.</li> <li>- 계약대상두수: 가축의 종류 및 구분마다 사업실시기간의 계약대상농장마다 예상두수로 함. 예상두수 등을 변경할 경우 계약대상가축 예상치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함.</li> </ul> </li> </ul>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2.4. 일본가축방역호조제도의 납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액은 가축의 종류(축종 및 같은 축종 내 성장단계별)마다 호조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함.
- 이 금액에서 ALIC가 보조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구한 다음, 이를 해당 사업 실시기간에 예상되는 계약대상두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를 기준

으로 가축의 종류 및 구분마다 1두당 생산자 적립금액을 정함.

- 지원 단가는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여 보정한 뒤, 정해진 공식에 의해 산정함. 즉, 농림수산성의 농업경영통계조사 중 축산물생산비 통계 및 영농유형별 경영통계와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등을 이용함.
- 이를 기초로 가축의 종류 및 구분별 보조금 지원 상환 단가를 요강 별표 4에 의해 정하고 있음. 산정된 단가는 호조금지원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구분별로 1두당 호조금 지원 단가를 설정함.

〈표 2-10〉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4

가축의 종류, 계약구분 및 가축의 구분	지원 상환 단가
경영지원호조금	
1. 유옹우(물소(식용생산에 관한 것에 한함)을 포함)	1두당 181,000엔
가. 유옹우(24개월령 이상의 것)	1두당 29,000엔
나. 유옹우(12개월 이상 24개월령 미만의 것)	1두당 24,000엔
다. 유옹우(12개월 미만의 암소)	
2. 육옹우	
가. 육옹우전용	1두당 175,000엔
(가) 번식암소(24개월령 이상의 것)	1두당 55,000엔
(나) 번식암소(12개월 이상 24개월령 미만의 것 및 비육우(암, 12개월령 이상의 것)	
(다) 비육우(수, 12개월령 이하의 것)	1두당 55,000엔
(라) 송아지(12개월령 미만의 것)	1두당 55,000엔
나. 교잡종	
(가) 비육우(12개월령 이상의 것)	1두당 38,000엔
(나) 송아지(12개월령 미만의 것)	1두당 33,000엔
다. 유옹종(물소(식용에 관련된 것에 한함)을 포함)	
(가) 비육우(12개월령 이상)	1두당 29,000엔
(나) 송아지(12개월령 미만)	1두당 24,000엔
3. 돼지	
가. 가족형	
(가) 번식용종돈(암)	1두당 49,000엔
(나) 번식용종돈(수)	1두당 49,000엔
(다) 비육돈(21일령 이상의 것)	1두당 10,000엔

(계속)

가축의 종류, 계약구분 및 가축의 구분	지원 상한 단가
나. 기업형	
(가) 번식용종돈(암)	1두당 57,000엔
(나) 번식용종돈(수)	1두당 57,000엔
(다) 비육돈(21일령 이상)	1두당 12,000엔
(4) 닭	
가. 가족형	
(가) 산란계(성계120일령 초과)	1수당 690엔
(나) 산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수당 320엔
(다) 육용계	1수당 20엔
(라) 종계(성계 120일령 초과)	1수당 930엔
(마) 종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수당 430엔
나. 기업형	
(가) 산란계(성계120일령 초과)	1수당 860엔
(나) 산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수당 400엔
(다) 육용계	1수당 30엔
(라) 종계(성계 120일령 초과)	1수당 190엔
(마) 종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수당 550엔
(5) 메추리	1수당 200엔
(6) 오리	1수당 320엔
(7) 거위	1수당 320엔
(8) 호로호로조	1수당 320엔
(9) 칠면조	1수당 320엔
(10) 타조	1수당 31,900엔
2. 소각·매물등호조금	
(1) 유용우 및 육용우	
가. 가전법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이 있는 경우	1두당 37,000엔
나. 기타	1두당 74,000엔
(2) 돼지	
가. 가전법제59조이 규정에 따른 비용 지원이 있는 경우	1두당 2,000엔
나. 기타	1두당 4,000엔
(3) 닭※	1수당 80엔
(4) 메추리	1수당 80엔
(5) 오리	1수당 80엔
(6) 거위	1수당 80엔
(7) 호로호로조	1수당 80엔
(8) 칠면조	1수당 80엔
(8) 타조	1수당 3,520엔

주: 소각·매물등호조금 지원액은 닭 및 기타 가금에 있어서는 요강제4의 4(8)의 라.의 (나)의c의 마리수에 지원상한단가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각·매물등에 필요한 경비의 90% 상당액으로부터 가전법제21조에 따른 소각등에 대한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함.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하며, 공모단체의 장은 호조금의 금액이 부족할 경우, 호조금 지원액을 삭감할 수 있음.
- a. 고정경비의 보정
    - (a) 고용노임보정 (1)
      - 지원상한단가에서의 고용노임×(지원대상농장에 있어서 1두당 고용노임<sup>12</sup>/생산비에 있어서 1두당 고용노임)
    - (b) 지대 보정 (2)
      - 지원상한단가에서의 지대\*(지원대상농장에 있어서 1두당 지대<sup>13</sup>/생산비에 있어서 1두당 지대)
    - (c) 감가상각비 보정(3)
      - 지원상한단가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지원대상농장에 있어서 1두당 지대<sup>14</sup>/생산비에 있어서 1두당 감가상각비)
  - b. 공사기간의 보정(4)
    - 보정계수 = 지원대상농장의 가축도입 계획에 의한 공사기간<sup>15</sup>/지원상한단가에 있어서 공사기간
  - c. 호조금 지원 단가의 산정
    - 호조금 지원단가<sup>16</sup> = [(1)+(2)+(3)+기타고정비]×(4)

12 지원대상농장의 직전 두당 고용임금으로 하며, 고용노임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고용노임노동시간을 가지고 산정함.

13 지원대상농장의 직전 두당 지불지대로 하며, 노선가(路線價란 시가지적 형태를 형성하는 지역의 노선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면하는 택지의 1m<sup>2</sup>당 평가액) 등에 의해 산정.

14 지원대상농장의 직전 1두당 감가상각비로 함.

15 지원대상 농장의 지원대상 질병 발생 등에 따라 가축의 이동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경영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 가축도입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1개월 미만은 절삭)

16 호조금지원상한단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해당 상한단가를 호조금 지원단가로 함. 닭과 기타 가금에 대해서는 두당을 각각 수당, 개월당으로 바꿈.

-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부과 요율은 요강 별표 3과 같이 정해져 있음. 이를 기초로 하여, 호조금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공모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자체의 공모단체는 호조금의 지원에 있어 각각의 생산자 기금 및 기구의 보조금을 원자금으로 하여 지원하며, 각각 지원액의 2분의 1씩을 충당함.
- 단,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업 참가자에게는 지원해야 할 호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지원한 호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음. 또한 부과금 감면 요건은 별도로 없음.

〈표 2-11〉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요강 별표 5

축종	계약구분	가축 구분	생산자적립금 단가	참고(2017.11. 가격)
소		1. 유용우(물소(식용생산에 관한 것에 한함)을 포함) (1) 유용우(24개월령 이상의 것) (2) 유용우(24개월령 미만의 것)	1두당 235엔 1두당 95엔	북해도 유우 육성우(12.14) 511,380엔
		2. 육용우 (1) 육전용중번식암소(24개월령 이상의 것) (2) 육전용중번식암소(24개월령 미만의 것 및 육전용중번식 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송아지 포함) 및 육전용중비육우(육전용중비육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송아지 포함)	1두당 225엔 1두당 110엔	
		(3) 육전용중과 유용종의 교잡종(이하 교잡종)비육우(교잡종비육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송아지 포함)	1두당 105엔	흑모화우(거세), 11월) 306kg 804,147
		(4) 유용중비육우(물소(식용생산에 관한 것에 한함)을 포함. 또한, 유용중비육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를 포함)	1두당 95엔	
돼지	가축형	1. 번식용중돈(암) 2. 번식용중돈(수) 3. 도축장에 출하되는 비육돈	1두당 120엔 1두당 120엔 1두당 30엔	비육돈 11월 자육kg당 580엔
	기업형	1. 번식용중돈(암) 2. 번식용중돈(수) 3. 도축장에 출하되는 비육돈	1두당 125엔 1두당 125엔 1두당 35엔	
닭	가축형	1. 산란계(성계 120일령 초과) 2. 산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3. 육용계 4. 종계(성계 120일령 초과) 5. 종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수당 4.5엔 1수당 2.0엔 1수당 0.1엔 1수당 5.5엔 1수당 2.5엔	계란 M, 11월 동경228엔 브로일러 325엔/kg



(계속)

축종	계약구분	가축 구분	생산자적립금 단가	참고(2017.11. 가격)
닭	기업형	1. 산란계(성계 120일령 초과)	1수당 5.5엔	
		2. 산란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수당 2.5엔	
		3. 육용계	1수당 0.2엔	
		4. 종계(성계 120일령 초과)	1수당 7.5엔	
		5. 종계(육성계 120일령 이하)	1수당 3.5엔	
메추리			1수당 5.0엔	
오리			1수당 2.0엔	
거위			1수당 2.0엔	
호로				
호로조			1수당 2.0엔	
칠면조			1수당 2.0엔	
타조			1수당 190엔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표 2-12〉 일본 가축방역호조사업의 납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납부액 산정기준	○ 가축의 종류마다 호조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에서 기구가 보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사업 실시기간에 예상되는 계약대상두수로 나눈 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의 종류 및 구분마다 1두당 생산자적립금액을 정하기로 함.
납부액 산정 방법	○ 단가설정: - 농림수산성의 농업경영통계조사 중 축산물생산비 통계 및 영농유형별 경영통계와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 등에 따라, 가축의 종류 및 구분 별 보조금 지원 상한 단가를 요강 별표 4에 의해 정함. - 호조금지원 인정위원회를 개최, 계약구분별 1두당 호조금 지원 단가 설정 ○ 산정기준: a. 고정경비의 보정 (a) 고용노임보정 (1) - 지원상한단가에서의 고용노임*(지원대상농장에 있어서 1두당 고용노임/생산비에 있어서 1두당 고용노임) (b) 지대 보정 (2) - 지원상한단가에서의 지대*(지원대상농장에 있어서 1두당 지대/생산비에 있어서 1두당 지대) (c) 감가상각비 보정(3) - 지원상한단가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지원대상농장에 있어서 1두당 지대/생산비에 있어서 1두당 감가상각비) b. 공사기간의 보정(4) - 보정계수=지원대상농장의 가축도입 계획에 의한 공사기간/지원상한단가에 있어서 공사기간 c. 호조금 지원 단가의 산정 - 호조금 지원단가=[(1)+(2)+(3)+기타고정비]*(4) - 공모단체의 장은 호조금의 금액이 부족할 경우, 호조금 지원액을 삭감할 수 있음.
부과 요율	○ 호조금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공모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함. 공모단체는 호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각각의 생산자 기금 및 기구의 보조금을 원자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각각 지원액의 2분의 1씩을 총당하는 것으로 함. - 단,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업참가자에게는 지원해야 할 호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지원한 호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음.
감면 요건	해당 없음.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2.5.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의 사용 용도

-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은 가축방역 및 살처분 매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도 경영지원호조금에도 지원함.
- 경영호조지원금이란 해당사업 참가자 즉, 해당사업에 계약한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가 경영을 재개하려 할 경우, 가축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이 때 가축도입을 위한 계획에 따라 가축의 도입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경비 특히 공사 부분의 고정경비 등에 지원하는 것임.
- 축종별로 살펴보면, 1) 소의 경우 살처분된 젖소 및 육용우로서 가축방역원 등이 확인된 소에 대해 새로 도입된 또는 호조금지원 인정위원회가 인정한 도입계획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추정되는 젖소 또는 육용우에 대해 지원함. 2) 돼지의 경우에는 가전법 제 16조 또는 제 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된 돼지로서,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돼지에 대해 지원함.
  - 즉,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호조금지원인정위원회가 인정한 도입계획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확실하게 추정되는 돼지에 지원함. 번식용 종돈에 있어서는 해당 돼지 또는 별도의 자료가 없을 시에는 종돈 1마리를 비육돈 11두를 상한으로 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봄.
- 3) 닭 및 기타 가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질병의 발생에 따라 사망 또는 가전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살처분 된 닭 및 기타 가금으로 가축방역원이 확인한 닭 또는 가금에 지원함.
  - 즉,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호조금지원인정위원회가 인정한 도입계획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확실하게 추정되는 닭 또는 기타 가금에 지원함.
- 이 외에도 4) 소각 및 매립 등 호조금이 있음. 이는 가축을 소각, 매립 또는 화장장으로 화장 처리하기 위해 사업 참가자가 부담한 경비를 지원함. 이 때,

사업참가자의 부담에 따라 소각된 것으로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축종(소, 돼지, 닭)별로 모두 가전법에 따라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수를 기준으로 함.

〈표 2-13〉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사용 용도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사용 용도	○가축방역 및 살처분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경영지원호조금 - 해당사업 참가자가 그 경영을 재개할 경우, 가축도입계획 등에 따라 가축의 도입을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공사 부분의 고정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1) 소의 경우 살처분된 젖소 및 육용우로서 가축방역원 등이 확인한 소 - 새로 도입된 또는 호조금지원 인정위원회가 인정한 도입계획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추정되는 젖소 또는 육용우 2) 돼지의 경우, 가전법 제 16조 또는 제 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된 돼지로서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돼지 -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호조금지원 인정위원회가 인정한 도입계획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확실하게 추정되는 돼지 - 번식용 종돈에 있어서는 해당 돼지 및 11두를 상한으로 한 비육돈 도입으로 볼 수 있음 3) 닭 및 기타 가금의 경우, 지원대상 질병의 발생에 따라 사망 또는 가전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살처분 된 닭 및 기타 가금으로 가축방역원이 확인한 닭 또는 가금 -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호조금지원 인정위원회가 인정한 도입계획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확실하게 추정되는 닭 또는 기타 가금 4) 소각 및 매립 등 호조금 - 가축을 소각, 매립 또는 화장장으로 화장처리하기 위해 사업참가자가 부담한 경비를 지원 - 사업참가자의 부담에 따라 소각된 것으로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마릿수 a. 소: 가전법에 따라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수 b. 돼지: 가전법에 따라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수 c. 닭: 가전법에 따라 가축방역원이 인정한 수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2.6.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의 징수 및 사용 절차

- 징수절차 중 생산자 적립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음. 먼저, 1) 각 사업 참가자의 계약대상가축두수의 요강 별표 3에서 정한 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을 생산자적립금으로 지원계약을 체결한 공모단체 또는 현 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 단, 2)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1)에서 정한 것 외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장이 정한 비율(추가부담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생산자적립금으로 하여, 사업참가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현 단체는 2)에 따라 납부된 생산자적립금을 공모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공모단체에게 납부하도록 함.
- 사용절차 즉, 보조금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임.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함.
- 2) 보조금 지원 변경 신청은 1)과 같음. 2) 보조금의 대략적 계산 절차임. 이사장은 지원결정액을 한도로 하여 보조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보조금의 대강 산정 청구를 하는 경우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사업실시 절차와 4) 사업실시 보고 절차가 뒤이어 이루어짐.
- 조성 및 관리 운영은 축종마다 각각 다른 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됨. 운영에 있어서 발생한 과실은 해당 기금에 산입함.
- 공모단체는 요강 제 2의 1의 (1)에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방역호조기금을 건드릴 수 없음.
- 사업실시기간 종료시점에서 소와 돼지기금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잔액 중 2분의 1 상당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이사장이 정한 기간 내에 공익사단법인 중앙축산회의 호조지원기금(가축방역호조기금 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 요강(2003년 10월 1일부 15 농축기 제 48호) 제 2의 1에 따라 조성된 가축방역호조기금 중에서, 기구로부터 보조금을 가지고 만든 기금을 말함)에 환입하는 것으로 함.

〈표 2-14〉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징수 및 사용 절차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징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적립금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각 사업 참가자의 계약대상가축두수의 요강 별표 3에서 정한 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을 생산자적립금으로 지원계약을 체결한 공모단체 또는 현 단체에 납부하여야 함.</li> <li>- 나. 단,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가.에서 정한 것 외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장이 정한 비율(추가부담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생산자 적립금으로 하여, 사업참가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li> <li>- 현 단체는 나.에 따라 납부된 생산자적립금을 공모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공모단체에게 납부</li> </ul> </li> </ul>
사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 신청: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li> <li>- 보조금 지원 변경 신청: 1.과 같음</li> <li>- 보조금의 대략적 계산: 이사장은 지원결정액을 한도로 하여 보조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보조금의 대강 산정 청구를 하는 경우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li> </ul> </li> <li>○ 사업실시</li> <li>○ 사업실시 보고</li> <li>○ 조성 및 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종마다 각각 다른 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li> <li>- 운영에 있어서 발생한 과실은 해당 기금에 산입</li> <li>- 공모단체는 제 2의 1의 (1)에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총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방역호조기금을 건드릴 수 없음</li> <li>- 사업실시기간종료시점에서 소와 돼지기금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잔액 중 2분의 1 상당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이사장이 정한 기간 내에 공익사단법인 중앙축산회의 호조지원기금(가축방역호조기금 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 요강(2003년 10월 1일부 15 농축기 제 48호) 제 2의 1에 따라 조성된 가축방역호조기금 중에서, 기구로부터 보조금을 가지고 만든 기금을 말함)에 환입하는 것으로 하며 환입된 후의 잔액은 사업참가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함. 단,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음.</li> <li>- 사업실시기간 종료시점에서, 닭과 기타 가금에 있어서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 잔액을 사업참가자에게 반환. 단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음.</li> </ul> </li> </ul>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기금으로 재귀속된 후의 잔액은 사업참가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함. 단,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사업실시기간 종료시점에서, 닭과 기타 가금에 있어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 잔액을 사업참가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단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2.7.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관련 법률

-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징수에 관련된 법률은 ‘가축방역호조기금사업 실시요강’임. 이 외의 관련 법률로, 다음과 같은 법률 등이 있음.
- 먼저,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지구(ALIC)는 호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2002년 법률 제 126호) 제 10조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함.
-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보조금 등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 179호)’, ‘보조금 등에 관련된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955년 정령 제 255호)’, ‘농축산업 진흥사업의 실시에 대하여(2003년 10월 1일부 15농축기 제 48호-1)’, ‘농축산업 진흥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에 정지조치에 대하여(2014년 3월 31일부 25농축기 제 5376호)’ 등의 법률이 있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사업 실시기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표 2-15〉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관련 법률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	
징수관련 법률	가축방역호조기금사업 실시요강
관련 법률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 진흥지구(ALIC)는 호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2002년 법률 제 126호) 제 10조 제 2호에 규정에 따라 보조함.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보조금 등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 179호), 보조금 등에 관련된 예산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955년 정령 제 255호), 농축산업 진흥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2003년 10월 1일부 15농축기 제 48호-1) 농축산업 진흥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에 정지조치에 대하여 (2014년 3월 31일부 25농축기 제 5376호) 정한 것 외에 가축방역호조기금지원사업 실시기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료: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

- 일본에서는 가축방역호조금제도 이외에 방역비용 부족 시 마을단위(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음. 일례로 큐슈 사가

현 태량정(太良町, 타라초)에서는 아래 참고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한 방역비용을 마을의 축산농가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아래 참고는 조례의 전문(全文)임.

### 〈참고〉

태량정(太良町) 가축방역대책사업 분담금 징수조례  
 \*태량(타라)정은 사가현 후지쓰군 소재의 마을  
 2014년 6월 20일 조례 제16호

#### 제 1조 취지

이 조례는 정(町)이 실시하는 가축방역대책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 67호) 제 224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 2조 분담금 징수의 대상

분담금은 해당 사업의 실시에 따라 이익을 받는 농가에게 징수함

#### 제 3조 분담금의 액

분담금의 액은 해당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국가 및 현으로부터 출연받은 보조금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함

#### 제 4조 분담금액 징수방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해당연도 내에 징수함

#### 제 5조 분담금 징수액 연기 및 감면

정장(町長)은 천재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 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분담금 징수를 연기 또는 이를 감면할 수 있음.

#### 제 6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장이 별도로 정함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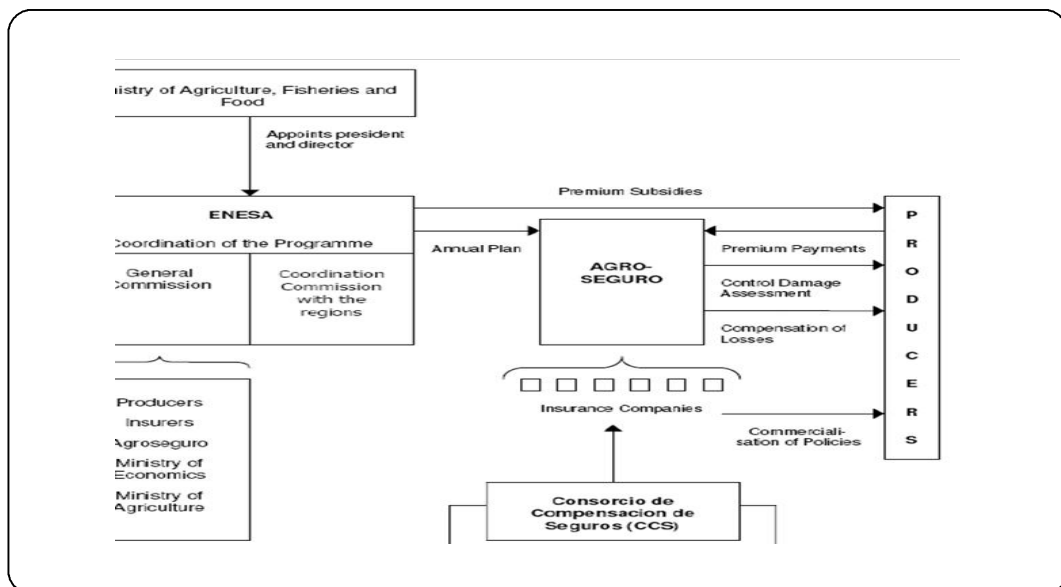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 3. 기타 국가 방역부담금 운용 기관

#### 3.1.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기금 대신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민간 보험사 중심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 보험업체들이 연합하여 “Agroseguro” 라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질병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Agroseguro”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험업체의 손실 보전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이때 사육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타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

〈그림 2-4〉 스페인의 Agroseguro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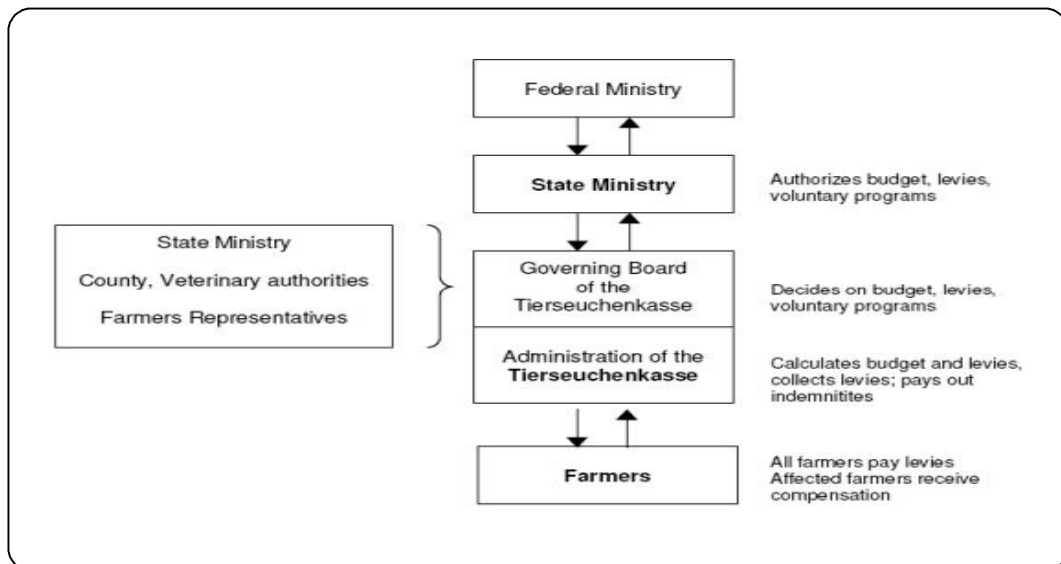
자료: “Managing animal diseases risk: incentives and governance of external effects”, OECD Workshop on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Paris, 2010.



### 3.2. 독일

- 독일에서는 동물질병기금(Tierseuchenkassen)을 운영하고 있음. 이 기금은 1909년에 제정된 「Bundesländer」에 근거하여 수립되었고, 정부기금 50%와 축산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부담금 50%로 운영됨. 이 외에 공공단체로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2-5〉 독일의 동물질병기금 운영 체계



자료: "Managing animal diseases risk: incentives and governance of external effects", OECD Workshop on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Paris, 2010.

- 동물질병기금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1) 모든 농가들은 부담금을 지불함.
  - 2) 관리행정 기관은 예산과 부담금을 계산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며, 보상금을 지불함.
  - 3) 관리위원회는 예산, 부담금, 프로그램에 대하여 결정함.
  - 4) 주정부에서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 부담금, 프로그램에 대하여 승인함.

## 4. 국외사례 시사점

### 4.1. 네덜란드

- 정부는 품목 생산자위원회와의 합의 하에 동물건강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동물건강기금은 동물 질병 예방 및 퇴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조직으로, 축종별로 운영됨.
-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종 방역비용 및 농가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생산자위원회에 동물건강기금에서 지불할 비용을 청구함.
- 기금은 업계(축산농가 등)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운영되나, 부담액의 변동성은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음. 이는 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생산자위원회에서 매 5년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질병 발생 시 기금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상한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생산자위원회와 정부의 협의에 따르면 평시 가축방역활동 비용은 정부와 업계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생산자위원회가 지불액 상한선 내에서만 지불하고, 초과분은 정부와 EU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부담금 산정 기준은 농가별 축종, 마릿수, 생산량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농가는 I&R, Avined, KIP와 같은 전산 시스템에 산정 기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됨.
- 따라서 형평성 있는 부담금 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산 시스템을 잘 구축하

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직접적 피해 이외에 간접적 피해는 기금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간접적 피해보상을 위해 민간 보험제도 적용 가능성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이 밖에 주요 특징으로 방역 노력 정도에 따른 차등 부담이나, 특정 사유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감면 조건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질병이 발병한 축종의 기금 보유 한도액이 부족할 경우 다른 축종 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하여 운영하기도 함.

## 4.2. 일본

-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가축방역정책의 일환으로, 가축질병 시 공모단체(또는 현단체)와 계약이 된 축산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생산비를 평가하여 보상함.
- 보상 체계는 정부에서 산정한 부담금을 농가가 공모단체(또는 현단체)에 납입하고 정부도 농가가 납입한 만큼의 금액을 ALIC에 매칭펀드 하면, 이로 인한 모든 금액은 중앙축산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됨.
- 가축 질병 발생으로 계약된 농가에서 살처분이 실시되면, 공모단체(또는 현단체)가 ALIC에 지출 신청을 하고 ALIC는 이를 심의하여 지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음.
-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기금 징수, 운영, 그리고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징수와 운영은 공모단체(또는 현단체)와 ALIC가 각각 담당하며, 기금 관리는 중앙축산회에서 담당함.

-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농가에 대한 보상이 생산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경영을 재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시 추후 가축보험제도 등을 통해 농가에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외에도 가축 방역비용 부족 시 마을단위(시·정·촌)로 조례를 마련하여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음.
- 분담금 징수 대상은 가축방역대책사업에 따라 이익을 받는 축산 농가로,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해당연도 내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분담금 징수가 연기 또는 감면 될 수 있음.



## 제 3 장

---

### 방역재원 확충 방법

#### 1. 국내 방역비 지출 현황

##### 1.1.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현황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가축전염병에는 구제역, 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이 있음. 질병 발생에 따른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AI 발생으로 인하여 다시 증가하였음.
- AI 보상금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전체 가축전염병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0%에 달함.
- 동기간에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액의 연평균 증감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AI 보상금의 연평균 증감률은 17.8%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질병 발생에 따른 전체 보상금은 연평균 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제역과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은 각각 연평균 62.0%, 35.7%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급 현황(2011~2017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구제역	1,497,735	58,292	0	340	32,937	5,970	4,528	2.1	-62.0
A1	64,981	858	0	101,722	38,030	36,271	173,296	81.0	17.8
브루셀라	24,181	11,117	4,377	2,843	2,602	2,920	1,709	0.8	-35.7
돼지열병	0	0	0	11	0	2,135	0	0.0	-
소결핵병 (사슴결핵 등)	11,990	9,708	10,564	16,640	16,350	18,371	9,081	4.2	-4.5
기타	4,347	859	581	819	376	2,581	25,231	11.8	34.1
계	1,603,234	80,834	15,522	122,375	90,295	68,248	213,845	100.0	-28.5

주: 17년도는 집행완료 기준(17년 8월)으로 지급미완료 금액은 반영되지 않음. 가축질병의 경우 겨울철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를 넘기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1.2. 시 관련 정부 예산 소요액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은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입식육자 및 수매로 구성됨.
- 생계안정자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 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사육 시 위탁사육농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정부 24 참조).
- 소득안정자금은 보호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정부 24 참조).

〈표 3-2〉 AI 관련 예산 지출 총계(국비)

단위: 억 원, (%)

구분	살처분보상금 전체(국비)	생계·소득안정자금	입식용자·수매	합계	
'03/'04년	458 (52.4)	55 (6.3)	361 (41.3)	874 (100.0)	
'06/'07년	253 (74.6)	15 (4.4)	71 (20.9)	339 (100.0)	
'08년	683 (37.6)	48 (2.6)	1,086 (59.8)	1,817 (100.0)	
'10/'11년	670 (83.0)	39 (4.8)	98 (12.1)	807 (100.0)	
'14/'15	1차	1,017	47	870	2,335
	2차	375	26		
	3차	25	5	46	76
	소계	1,417 (58.8)	78 (3.2)	916 (38.0)	2,411 (100.0)
'16/'17 (추정)	1차	4	0	0	4
	2차	2,291	129	488	2,908
	3차	15	0	0	15
	소계	2,310 (78.9)	129 (4.4)	488 (16.7)	2,927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주요 가축전염병 가운데 보상금액이 가장 큰 AI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비목은 살처분 보상금이었음. AI로 인한 전체 살처분 보상금(국비)은 최근 3년간(14~17년) 3,727억으로, 지난 10년간(08~17년) 5,080억인 것으로 집계됨.
- 한편 전체 AI 관련 예산 지출액 중 생계·소득안정자금의 비중은 '03/'0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5% 이내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비해 2016~2017년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 수습 소요예산은 총 2,92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살처분보상금은 78.9%(2,310억 원)를 차지함.



〈표 3-3〉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 수습 소요예산(국비)

단위: 억 원

구분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입식 용자	수매	합계
16.3.23~4.5	1차	4	0	0	0	0	4
16.11.16~17.4.4	2차	2,291	12	117	274	214	2,908
17.6.2~6.19	3차	15	0.3	0	0	0	15.3
2차 및 3차	소계	2,306	12.3	117	274	214	2,923.3
16~17년 합계		2,310	12.3	117	274	214	2,927.3

주: '17.8월 국비 소요액(추정)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2. 방역비 부담체계 전환의 필요성

- 최근 AI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됨. 가축전염병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AI 로 인한 정부 지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음.
-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농가(가축 소유자)에게 원인유발자 책임의 원칙(pollutant pay principle)과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을 적용하여 방역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가축질병 전파와 발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에 방역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방역세의 경우 가축소유주가 부담토록 돼 있지만 AI의 경우 닭 이외의 철새, 야생조류, 비둘기 등도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가 모호한 측면도 존재함.

### 3. 방역비 부담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sup>17</sup>

- 정부의 재원 조달과 관련되는 방법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공공 부문의 재원 조달과 민간 부문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재원조달은 대부분 조세의 형태로 이루어짐.
-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라고 정의하고 있음.
- 조세는 일반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목적세는 특정 지출에 사용하도록 징수 때부터 정해져 있는 세목 혹은 공공수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도 법률에서 특정 수입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sup>18</sup>.
- 목적세는 좁은 의미의 목적세와 넓은 의미의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음. 좁은 의미의 목적세는 국내 교통세나 교육세처럼 징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조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입이 특정 분야에 사용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목적세는 각종 부담금, 사용료, 의료보험료, 연금 기여금 등과 같이 세금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sup>19</sup>.
- 일반적으로 세금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금은 분담되고,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며,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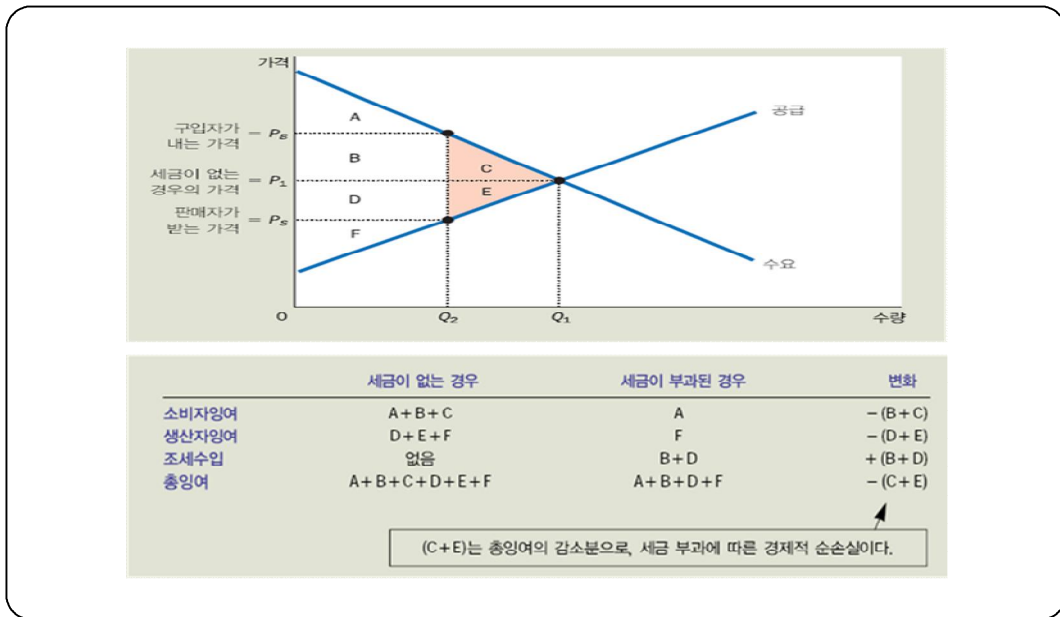
17 한국조세연구원(2011). ‘복지재원 조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함.

18 한국조세연구원(2007).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19 한국조세연구원(2011).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 세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조세 수입은 증가하게 됨. 그러나 소비자 잉여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합이 조세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함.
- 또한 초기 세금부과로 인한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됨으로써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되어 결국 조세수입도 감소할 수 있음.

〈그림 3-1〉 세금 부과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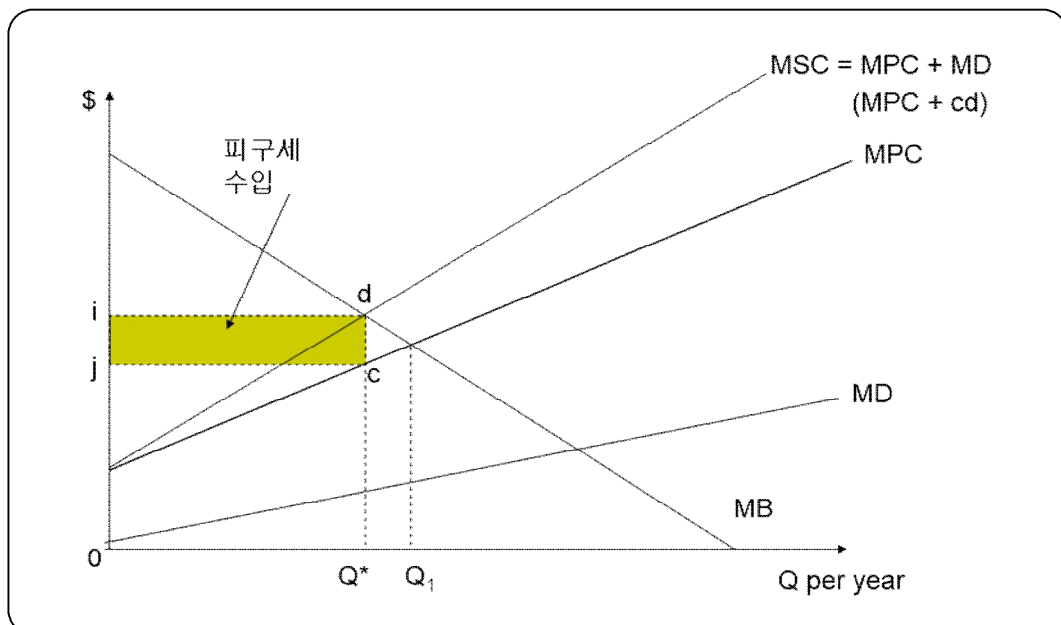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일반적으로 예산의 지속적 확보 측면에서 목적세입과 일반세의 이용은 큰 차이가 있으나, 방역재원의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방역재원에 부담금이나 기여금으로 전체 지출을 충당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지출이 삭감되기보다는 일반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 지출에 비해 재원의 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재원의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목적세입의 경우에는 남은 재원을 축적하여 향후에 활용 가능함.
-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방역재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비용과 혜택의 크기를 비교하여 소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나, 공적 부조와 같은 이전지출에 적용은 거의 불가능함.
  - 투명성 측면에서, 부담금은 혜택을 입는 쪽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투명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목적세의 경우 세입 측면에서 복잡한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비판을 받는 이유도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불분명하여 투명한 예산배분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방역재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부담금(기여금)과 같이 수혜를 입는 자들이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수혜와 비용부담이 다른 경우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목적세의 경우에는 비용이 반드시 혜택을 입은 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따라서, 방역 자원 확충을 위한 일반세의 부과 형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조세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민의 수용성, 투명성,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일반세보다는 목적세, 목적세 중에서도 부담금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부담금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부과 이론은 피구세(Pigouvian Tax)임. 피구세는 소비자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제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환경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즉, 피구세는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비용 만큼(외부비용)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여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임.
- 일반적으로 사적 기업은 비용곡선을 사적 한계비용(Marginal Private Cost; MPC)로 간주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적균형점(Q\*)에 도달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가 피해 유발행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적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제적 유인이 필요함.

〈그림 3-2〉 공적 대응 피구세



주: 한계 편익(MB, Marginal Benefit), 한계피해비용(MD, Marginal Damage), 사회적 한계비용(MSC, Marginal Social Cost), 사적 한계비용(MPC, Marginal Private Cost)

자료: Roseon 외(2011). Rosen의 재정학. 제9판.

#### 4. 부담금의 특성<sup>20</sup>

- 부담금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 할 수 있음<sup>21</sup>.
- 부담금은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기능을 가지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 있음.
  - ‘특별한 재정책임’은 일반적 납세의무자와는 다르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집단의 징수 목적에 대한 특별한 실체적 관련성이 있는 납부 의무를 뜻함.
-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할 수 있음. 특히 조세 중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음.
- 하지만,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음.
- 부담금은 부과대상, 부과기준, 사용목적 등이 조세와 구분됨.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있는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차이가 있음.

20 기획재정부(2017).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와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을 참조하여 작성함.

2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참조.

〈표 3-4〉 조세·목적세와 부담금의 차이

납세자	부과근거	지출용도	특성
부담금	특정이해관계자	특정용도(특별회계)	부과징수가 용이
목적세	담세력 여부	특정용도(특별회계)	부담자의 인적범위 다양
보통세	담세력 여부	지출의 자율성(일반회계)	안정적인 세원확보 우선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

- 부담금은 조세와 다르게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조세는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며, 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반면에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은 피구세(Pigouvian Tax)에서 찾을 수 있음. 피구세는 사적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를 경우 이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손실을 없애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세임.
- 일반국민들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통해 받는 추가적인 편익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추가비용의 크기(피구세)만큼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공급수준은 최적을 향해 진행된다는 논리임.
- 이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공공서비스 창출과도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보면, 환경오염물질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지 못함<sup>22</sup>. 이 때 피구세의 개념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을 달성이 가능함.

22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조항으로 인한 일부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부담금이 사실상의 조세 역할을 하고, 부과 타당성의 미흡, 중복부과, 불투명한 사용 등에서 비판의 대상<sup>23</sup>이 되고 있음.
- 법상에서 일반 국민과 구분되는 납부의무자의 특정성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로 인해 그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어, 금융감독 부담금, KBS TV 수신료 등과 같이 위헌심판 청구가 되기도 함<sup>24</sup>.

## 5. 부담금의 현황과 기능 및 도입절차

### 5.1. 부담금의 현황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1) 손괴자 부담금: 공공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수선·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 2)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 있음.
  - 3) 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 또는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있음
  - 4) 예치금: 해당사업의 복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예치하고 복구완료 후 반환하는 경우
  - 5) 유도성 부담금: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

<sup>23</sup> 한국지방세연구원(2012)

<sup>24</sup> 송하성(2007)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에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음

-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담금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5.2. 부담금의 기능

- 가전법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기금 설치 가능하다면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 첫째, 방역부담금은 방역사업 관련 비용을 축산관련사업자가 완전 책임지는 방안이며 둘째, 방역부담금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등을 통해 방역사업 관련비용의 일부를 축산관련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임.
- 현재까지의 가축방역세 도입 논의 결과, 방역기금 재원 조달은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방역기금에 출연하는 방역부담금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부담금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개별부담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대표적인 기능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임.
-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이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정한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공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 등에게 부과하여 해당사업의 시행과 재원 확보가 연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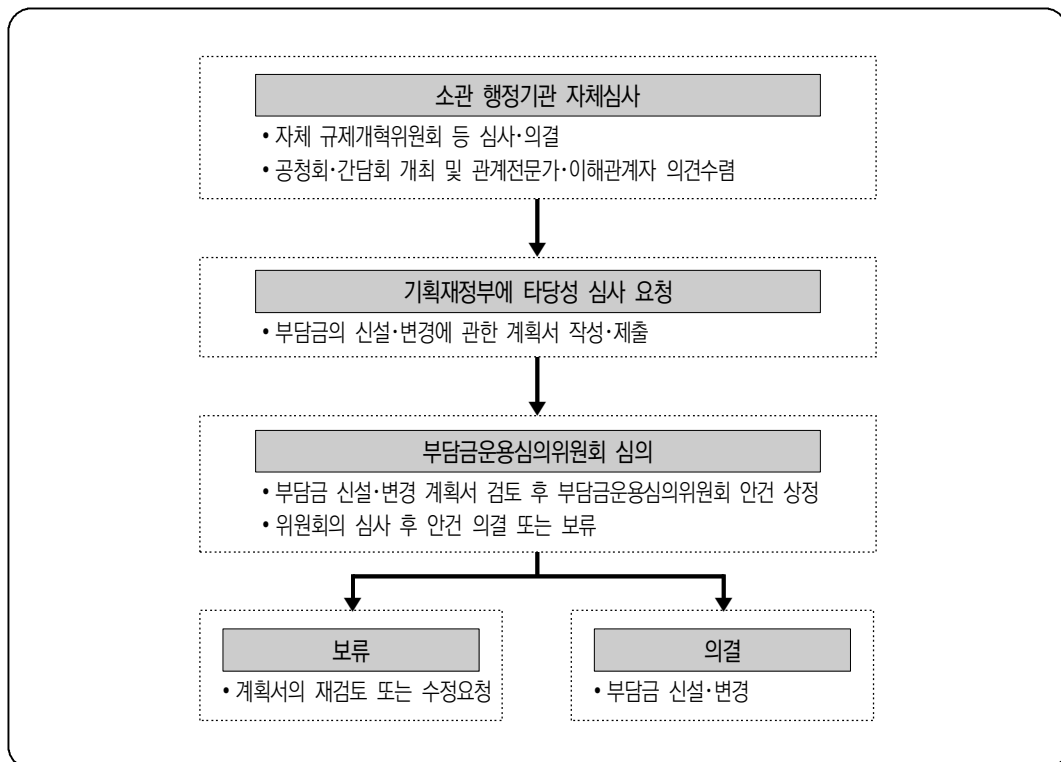
-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함.
-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음. 즉,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에게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
- 법적인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짐.
-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적인 가치에 적합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시키거나, 다른 반가치적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기도 함.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된 과밀부담금이 대표적임.

### 5.3. 부담금 도입 절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특정 정책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함.
- 부담금은 그 수입 대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되므로 해당 행정기관은 부담금을 통해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함.
- 그러나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 일각에서는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2001년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

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담금 신·증설시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지속적인 부담금운용평가 등이 제도화되었음.

〈그림 3-3〉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의 절차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2015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 공포하여 납부방법을 신용·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가산금 효율상한을 국세가산금 수준(채납액의 3%)으로 설정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음.

-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 씩 점검·평가함. 그 결과를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함.

### 〈표 3-5〉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요
    -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조성된 재원을 부과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6조(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 제7조(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제8조(부담금운용평가 제도)와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를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사
    - 부담금 신설·변경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한 국민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신설·변경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
      - 부과요건 등의 구성성과 명확성
      - 자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 기존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다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실질적 부담금 심사를 위하여 상기 기준에 따른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자체 심사결과 등도 포함하도록 함.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그 밖에 부담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부담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 2002년에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이후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부담금운용 평가
    - 법 제8조에 의거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결과 부담금 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법 제6조의2에 의거 2014년부터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작성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제4장

---

### 국내 유사 부담금 운영사례 검토

#### 1. 국내 부담금 제도 현황<sup>25</sup>

-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운용중인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2015년보다 4개가 감소하였음. 최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출연금에서 분리)이 부담금으로 신설되었으며, 한강수계 수질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대기 총량초과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은 과징금<sup>26</sup>으로 전환됨.
-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 18개, 국토교통부 17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농림축산식품부 7개 등을 운용하고 있음.

---

25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기획재정부)의 내용을 인용함.

26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써 금전지급의무를 지는 것임.

〈표 4-1〉 2016년 기준 부처별 운용 부담금 수

소관 부처	부담금 수
환경부	18개
국토교통부	17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9개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각 7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각 2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1개
합계	90개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부담금은 1961년 도로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부담금관리법이 도입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2〉 연도별 운용 부담금 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7개	14개	34개	95개	102개	100개	94개	95개	94개	90개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2016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19조 6,706억 원으로 2015년보다 2.9% 증가하였음.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 9,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징수실적의 25.3%를 차지함. 금융위원회가 18.8%인 3조 6,910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보건복지가 2조 9,630억 원으로 15.1%를 차지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778억 원, 158억 원, 40억 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실적이 적은 수준이었음.

- 징수실적 상위 6개 부처(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의 부담금 총액은 16조 7,179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5.0%를 차지하였고, 징수실적 하위 6개 부처(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원안위, 행안부, 식약처)의 부담금 총액은 4,020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0%를 차지하였음.

〈표 4-3〉 2016년 기준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단위: 억 원, %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1	산업통상자원부	49,827	25.3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87	1.9
2	금융위원회	36,910	18.8	11	중소벤처기업부	2,000	1.0
3	보건복지부	29,630	15.1	12	산림청	1,497	0.8
4	환경부	27,080	13.8	13	기획재정부	1,337	0.7
5	농림축산식품부	13,941	7.1	14	해양수산부	858	0.4
6	국토교통부	9,792	5.0	15	외교부	849	0.4
7	고용노동부	7,360	3.7	16	원자력안전위원회	778	0.4
8	문화체육관광부	6,631	3.4	17	행정안전부	158	0.1
9	교육부	4,331	2.2	18	식품의약품안전처	40	0.0
합계		19,706(100%)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2016년 징수된 전체 부담금 중 86.2%가 중앙정부의 기금(13조 7,296억 원)과 특별회계(3조 2,340억 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음. 이 외에 10.2%가 광역지방자치단체(1조 1,380억 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8,710억 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3.5%가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음.

〈표 4-4〉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 내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금액 (억 원)	137,296	32,340	11,380	8,710	6,980	196,706
비중(%)	69.8	16.4	5.8	4.4	3.5	100.0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귀속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귀속되었음.
- 산림청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로,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부담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담금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귀속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나누어 귀속되었음.

〈표 4-5〉 부처별 부담금 귀속 내역

소관부처	부담금 합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합계	196,706	137,296	32,340	11,380	8,710	6,980
금융위원회	36,910	36,696				214
기획재정부	1,337	1,153				1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87	3,687				
교육부	4,331	-		4,139	192	
외교부	849	517				333
행정안전부	158	-		148	11	
문화체육관광부	6,631	6,418				213
농림축산식품부	13,941	13,941				
산업통상자원부	49,827	27,534	19,148	116		3,029
보건복지부	29,630	29,630	-			
환경부	27,080	9,016	8,002	2,924	6,790	348
고용노동부	7,360	7,360	-			
국토교통부	9,792	-	3,692	4,052	1,713	335
해양수산부	858	568	-	1	4	285
산림청	1,497	-	1,497			
중소벤처기업부	2,000	-				2,000
원자력안전위원회	778	778				
식품의약품안전처	40	-				40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2. 검토 대상 부담금 제도의 선정 및 현황<sup>27</sup>

- 국내에서는 부담금이 조성될 경우 수입 대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관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음. 해당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통해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임.
- 2016년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는 부담금은 총 90개임. 이 중 방역부담금과 관련된 농어업분야 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담금의 형태로 판단되는 부담금으로 15개를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음.
-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4개, 행정안전부 1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환경부 2개, 국토교통부 1개, 해양수산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임.

〈표 4-6〉 방역부담금 관련 부처별 유사 부담금 선정 현황

부처	부담금 명칭	개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 부담금, 농산물수입 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물수입 이익금, 농산물수입 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2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1
환경부	수질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2
국토교통부	교통유발 부담금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조성금, 방제 부담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1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sup>27</sup> 선정된 기관별 유사 부담금별 운영 현황은 부록 참조.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시·도 단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중앙정부에서 부담금을 직접 징수·부과하는 경우는 없으며, 중앙정부는 징수된 부담금을 운용·사용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부담금은 부과기관과 징수기관이 동일하였으나, ‘농지보전 부담금’의 경우, 부과는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징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여, 부과와 징수기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표 4-7〉 부담금 별 부과 및 징수 기관 현황

부담금 명칭	부과 및 징수 기관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기관: 시·도, 시·군·구 징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산물수입 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수입 이익금,	농협경제지주
농산물수입 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인천, 군포, 용인, 하남, 문경)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전남 구례군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가 부담금	충남 보령시, 전남 구례군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개선 부담금	시·도
환경개선 부담금	시·군·구
교통유발 부담금	각 시장(구청장 및 군수 위임 가능)
수산자원 조성금	시·도
방제 부담금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한국약품안전관리원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표 4-8〉 부담금 별 귀속 주체 및 관리 계정 현황

부담금 명칭	귀속 주체	귀속 계정	배분율
농지보전 부담금	중앙정부	농지관리 기금	100%
농산물수입 이익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앙정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100%
축산물수입 이익금	중앙정부	축산발전 기금	100%
농산물수입 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정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기금	100%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지자체	상수도 특별회계	100%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회계 보문·안동·중문관광단지	1.5% 98.5%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공공기관	대전·무창포 해수욕장 지리산관광단지	100%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중앙정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00%
수질개선 부담금	중앙정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100%
환경개선 부담금	중앙정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100%
교통유발 부담금	지자체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98.8% 1.2%
수산자원 조성금	지자체	광역시자체 일반회계 기초지자체 일반회계	17% 83%
방제 부담금	공공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100%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중앙정부	방송통신발전 기금	10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공공기관	한국약품안전관리원	100%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징수된 부담금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수입이 귀속됨.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계정이나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음.
- 부담금은 기금, 특별회계 등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일반적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음. 때문에 부담금별 부과대상은 원인자, 수혜(익)자 부담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특정한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공공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련 사업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임.
- 방역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과대상을 크게 원인자, 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농지보전 부담금, 축산물수입 이익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준용하여 부담금을 수익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방제 분담금 등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표 4-9〉 부담금 별 부과대상 현황

부담금 명칭	부과 대상
농지보전 부담금	수익자
농산물수입 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익자
축산물수입 이익금	수익자
농산물수입 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익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수익자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수익자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원인자
수질개선 부담금	수익자
환경개선 부담금	원인자
교통유발 부담금	원인자
수산자원 조성금	수익자
방제 분담금	원인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수익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원인자

자료: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7).

### 3. 시사점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부담금의 경우 부과·징수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이며, 관리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음.

〈표 4-10〉 국내 부담금별 운영 현황

구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부과 · 징수	농지보전 부담금(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가 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수산자원 조성금	-	농지보전 부담금(징수) 축산물수입 이익금(농협) 농산물수입 이익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한국광해관리공단) 방제 부담금(해양환경관리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귀속 · 관리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수산자원 조성금	농지보전 부담금 농산물수입 이익금 축산물수입 이익금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보문·안동·중문관광단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가 부담금(대전·무창포 해수욕장, 지리산관광단지) 방제 부담금(해양환경관리공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가축방역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이 필요함.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 부과·징수 및 관리기관으로는 크게 중앙정부, 지자체,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 또는 기관에 방역 부담금의 부과·징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가축방역 부담금을 운영하는 2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5장

---

## 축종별 요율의 산출

### 1. 요율추정 방법 및 가정

- 방역비용 요율추정은 지자체 방역 자원 확충을 위하여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만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음.
- 방역비용 요율추정을 위하여 ① 평시 방역 비용만 고려, ② 살처분 보상금만 고려, ③ 평시방역비용을 제외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질병 발병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고려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음. 각각의 시나리오는 지방비의 50% 부담, 지방비의 25% 부담으로 세분하여 계산하였음.
- 축종별 방역비용 요율은 가금류와 우제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축종별로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축종별 방역비용 지출내역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같은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음.
- 이에 축종별 비중 산출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방문 조사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내역을 축종별로 분리하여 제시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각 축종별 방역비용 가중치를 평균하여 활용하였음.



- 가금류는 산란계, 육계, 오리로 구분하였고, 우제류는 한육우, 젓소, 돼지로 구분하였음.

〈표 5-1〉 축종별 비중 추정 결과

단위: %

	가금류			우제류		
	산란계	육계	오리	한육우	젓소	돼지
비중	5	15	5	29	5	41

- 평시 방역비용에 대한 축종별 부담금 규모와 축종별 요율 추정을 위하여 2017년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지방비 780억 원을 기준 금액으로 설정함.
- 가금류 AI살처분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소요된 살처분 보상금 2,306억 원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제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액 454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중 20%를 지방비로 산정함.
-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은 지방비는 461억 원, 우제류 살처분 보상금 지방비는 90억 원을 기준으로 함.
-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가금류는 2016~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우제류는 2014~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추후 자료 보강을 통하여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간 금액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이 때 충남과 충북의 한육우와 젓소에 대한 금액은 평시 방역비의 10%를 가정하였고, 전북의 젓소에 대한 금액도 평시 방역의 10%를 가정하였음.
-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에 대하여 가금류는 2,923억 원, 우

제류는 638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중 20%를 지방비로 산정함. AI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 중 지방비는 584억 원, 우제류 지방비는 127억 원으로 추정됨.

- 마리당 분담금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축통계를 이용하지 않고, 소규모 농가도 포함하여 조사한 2015년 센서스 자료<sup>28</sup>를 활용한 상시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이 자료는 가구당 부담금 산출을 위하여 가구당 사육마릿수를 활용하는 데 이용함.

## 2. 시나리오별 요율 추정 결과

### 2.1. 시나리오 1) 평시 방역비용만 고려

#### 2.1.1. 지방비의 50% 분담

- 평시 방역비용에 대한 축종별 부담금 규모와 축종별 요율 추정은 2017년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지방비 780억 원을 기준 금액으로 활용함.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의 50%를 부담할 경우 총 부담액은 390억 원 수준임.
- 가축방역부담금으로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의 50%를 부담할 경우, 축종별 부담금 규모는 돼지가 15,864 백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오리가 1,969 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음.

<sup>28</sup> 통계청의 가축동향 통계는 축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통계청 발간물인 농업센서스 자료는 5년마다 가축을 기르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표 5-2〉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산란계	육계	오리	한육우	젖소	돼지	지방비
비중(%)	5	15	5	29	5	41	
지방비 50%(백만 원)							39,008
전국사육마릿수(천 마리, 2015기준)	48,520	98,830	8,307	2,397	324	7,368	
가구당 사육 마릿수	62,000	53,957	13,753	31.1	61.7	2,372	
분담금 규모(백만원)	2,102	5,710	1,969	11,498	1,867	15,864	
마리당부담금액(원)	43.31	57.78	236.89	4,797	5,754	2,153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2,685	3,117	3,258	149	355	5,107	
회전율	1	6	4	1	1	2.2	
마리당부담금액(원)	43.31	346.7	947.6	4,797	5,754	4,737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2,685	18,705	13,032	149	355	11,235	

- 총 사육 마릿수를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액은 젖소가 5,745원으로 가장 높고, 산란계가 43.31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가구당 사육 마릿수를 고려한 가구당 평균 부담금액은 오리가 3,258 천원으로 가장 높고, 한육우가 149 천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음.
- 회전율을 고려하였을 경우, 산란계와 한육우, 젖소의 마리당 부담금은 변동이 없지만 육계와 오리, 돼지의 경우에는 각각 346.7원, 947.6원, 4,737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구당 부담금액 역시 산란계와 한육우, 젖소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지만, 육계와 오리, 돼지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2.1.2. 지방비의 25% 부담

- 평시 방역비용에 대한 축종별 부담금 규모와 축종별 요율 추정은 2017년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지방비 780억 원을 기준 금액으로 활용함.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의 25%를 부담할 경우 총 부담액은 195억 원 수준임.

- 가축방역부담금으로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의 25%를 부담할 경우, 축종별 부담금 규모, 마리당 부담금, 가구당 부담금, 회전율을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과 가구당 부담금의 규모가 5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산란계	육계	오리	한육우	젓소	돼지	지방비
비중(%)	5	15	5	29	5	41	
지방비 25%(백만 원)							19,504
전국사육마릿수(천 마리, 2015기준)	48,520	98,830	8,307	2,397	324	7,368	
가구당 사육 마릿수	62,000	53,957	13,753	31.1	61.7	2,372	
분담금 규모(백만원)	1,050	2,855	983	5,748	933	7,932	
마리당부담금액(원)	21.66	28.89	118.45	2,399	2,877	1,077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1,343	1,559	1,629	75	178	2,554	
회전율	1	6	4	1	1	2.2	
마리당부담금액(원)	21.66	173	474	2,399	2,877	2,368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1,343	9,352	6,515	75	178	5,618	

## 2.2. 시나리오 2) 살처분 보상금만 고려

### 2.2.1. 지방비의 50% 부담

-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가금류와 우제류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축종별 비중 또한 가금류와 우제류로 구분하여 다시 추정하였음. 살처분 보상금 지불액 중 지방비용은 가금류의 경우 약 230억 원, 우제류의 경우에는 약 45.4억 원 수준임.
- 가축방역부담금으로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부담할 경우, 가금류는 산란계의 부담금 규모가 20,19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육계는 1,110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오리는 육계보다는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제류 중 돼지는 3,56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젓소가 130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한육우는 845백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 사육 마릿수를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액은 가금류의 경우 산란계가 416.20원, 오리가 211.32원, 육계가 11.23원으로 분석되었음. 우제류의 경우에는 돼지가 483.80원, 젓소 401.79원 한육우 352.55원으로 분석되었음.
- 가구당 부담금은 가금류의 경우 산란계 25,804천 원, 오리 2,906천 원, 육계 606천 원, 우제류 중 돼지 1,148천 원, 젓소 25천 원, 한육우 11천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회전율을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과 가구당 부담금은 육계, 오리, 돼지에서 회전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산란계	육계	오리	지방비	한육우	젓소	돼지	지방비
비중(%)	87.6	4.8	7.6	46,120	18.6	2.9	78.5	9,080
지방비 50%(백만 원)				23,060				4,540
전국사육마릿수(천 마리, 2015기준)	48,520	98,830	8,307		2,397	324	7,368	
가구당 사육 마릿수	62,000	53,957	13,753		31.1	61.7	2,372	
부담금 규모(백만원)	20,194	1,110	1,755		845	130	3,565	
마리당부담금액(원)	416.20	11.23	211.32		352.55	401.79	483.80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25,804	606	2,906		11	25	1,148	
회전율	1	6	4		1	1	2.2	
마리당부담금액(원)	416	67	845		353	402	1,064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25,804	3,637	11,625		11	25	2,524	

### 2.2.2. 지방비의 25% 분담

- 정부의 50% 매칭펀드를 포함한 가축방역기금으로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의 25%를 부담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불액 중 지방비용은 가금류의 경우 약 115억 원, 우제류의 경우에는 약 22.7억 원 수준임.
- 분석결과는 지방비의 50% 부담 결과와 동일하지만, 부담금의 규모는 5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5〉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산란계	육계	오리	지방비	한육우	젓소	돼지	지방비
비중(%)	87.6	4.8	7.6	46,120	18.6	2.9	78.5	9,080
지방비 25%(백만 원)				11,530				2,270
전국사육마릿수(천 마리, 2015기준)	48,520	98,830	8,307		2,397	324	7,368	
가구당 사육 마릿수	62,000	53,957	13,753		31.1	61.7	2,372	
분담금 규모(백만원)	10,097	555	878		422	65	1,782	
마리당부담금액(원)	208.10	5.62	105.66		176.28	200.89	241.90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12,902	303	1,453		5	12	573	
회전율	1	6	4		1	1	2.2	
마리당부담금액(원)	208	34	423		176	201	532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12,902	1,818	5,813		5	12	1,262	

## 2.3. 시나리오 3) 살처분 보상금과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고려

### 2.3.1. 지방비의 50% 분담

- 살처분 보상금 지불액과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지방비는 가금류의 경우 약 292.3억 원, 우제류의 경우에는 약 63.8억 원 수준임.

-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부담할 경우, 가금류는 산란계의 부담금 규모가 25,600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육계는 1,407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오리는 산란계보다는 적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제류 중 돼지는 5,00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젓소가 183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한육우는 1,187백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 사육 마릿수를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액은 가금류의 경우 산란계가 527.62원, 오리가 267.89원, 육계가 14.24원으로 분석되었고, 우제류의 경우에는 돼지가 679.87원, 젓소 564.63원 한육우 495.44원으로 나타났음.
- 가구당 부담금은 가금류의 경우 산란계 25,804천 원, 오리 2,906천 원, 육계 606천 원, 우제류 중 돼지 1,148천 원, 젓소 25천 원, 한육우 11천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회전을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과 가구당 부담금은 육계, 오리, 돼지에서 회전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6〉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과 제반비용에 대한 50% 부담 추정 결과

	산란계	육계	오리	지방비	한육우	젓소	돼지	지방비
비중(%)	87.6	4.8	7.6	58,466	18.6	2.9	78.5	12,760
지방비 50%(백만 원)				29,233				6,380
전국사육마릿수(천 마리, 2015기준)	48,520	98,830	8,307		2,397	324	7,368	
가구당 사육 마릿수	62,000	53,957	13,753		31.1	61.7	2,372	
분담금 규모(백만원)	25,600	1,407	2,225		1,187	183	5,009	
마리당부담금액(원)	527.62	14.24	267.89		495.44	564.63	679.87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32,712	768	3,684		15	35	1,612	
회전율	1	6	4		1	1	2.2	
마리당부담금액(원)	528	85	1,072		495	565	1,496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32,712	4,611	14,737		15	35	3,547	

### 2.3.2. 지방비의 25% 부담

- 가축방역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불액과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하는 것을 가정하면, 지방비는 가금류의 경우 약 146.2억 원, 우제류의 경우에는 약 31.9억 원 수준임.
- 분석결과는 지방비의 50% 부담 결과와 동일하지만, 부담금의 규모는 5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7〉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과 제반비용에 대한 25% 부담 추정 결과

	산란계	육계	오리	지방비	한육우	젖소	돼지	지방비
비중(%)	87.6	4.8	7.6	58,466	18.6	2.9	78.5	12,760
지방비 25%(백만 원)				14,617				3,190
전국사육마릿수(천 마리, 2015기준)	48,520	98,830	8,307		2,397	324	7,368	
가구당 사육 마릿수	62,000	53,957	13,753		31.1	61.7	2,372	
부담금 규모(백만원)	12,800	704	1,113		594	92	2,505	
마리당 부담금액(원)	263.81	7.12	133.95		247.72	282.31	339.94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16,356	384	1,842		8	17	806	
회전율	1	6	4		1	1	2.2	
마리당 부담금액(원)	264	43	536		248	282	748	
가구당 부담금액(천원)	16,356	2,305	7,369		8	17	1,774	



### 3. 분석결과 시사점

-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가금류 2016-2017 자료, 우제류는 2014-2015 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나리오에 대한 요율을 추정하였음. 이러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실제 도입 시에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간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시·도, 시·군·구에 대한 방역비용 사용 내역이나 사육 축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자료 보강을 통하여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분석결과 지자체 방역비용 재원 확충을 위한 방역 부담금 운용은 각 축종별로 구분하여 조성함이 바람직함.
- 축종별로 각 시나리오별 부담금 규모나 마리당 부담금, 가구당 부담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평시 방역비용에 대한 부담금 규모나 마리당 부담액, 가구당 부담액에 대해서는 축종별로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분석과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에 대한 가금류, 특히 산란계와 오리의 부담액 규모나 마리당 부담액, 가구당 부담액이 부담 비중에 관계없이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음.
- 육계는 사육 주기가 짧고, 최근 AI 발병에 따른 피해가 산란계나 오리보다 적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부담 비중에 관계없이 수용이 가능한 수준임.
- 우제류의 경우에는 개체 당 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이나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부담 비중에 관계없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한 생산자와 이해 관계자의 방역비용 부담에 대한 접근은 단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평시 방역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제반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분석에서는 AI와 구제역에 대하여만 고려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각 축종별로 주요 질병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6장

---

### 방역 부담금 도입 시 운영방안

#### 1. 방역부담금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 1.1. 기금 조성방식(계약방식 vs 의무도입 방식)

- 방역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앞서 설명하였음. 이러한 기금을 거출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가입하는 방식과 일부 희망자에 한한 계약체결 방식임.
-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실시할 경우, 제도 시행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기금마련의 목적인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가령 일정 지역에 계약농가와 일반농가가 있다고 할 경우,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하여 농장소독, 출입차량 관리 등 방역관련 사업을 시행할 것임. 그러나, 일반농가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계약농가는 가축방역에 관한 것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임.

- 반면, 일반농가 주변에 계약농가만 있는 경우 계약농가의 방역활동으로 인한 일반농가의 무임승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계약농가의 손해, 일반농가의 무임승차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기금을 조성하여 방역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가축질병에 노출된 우려가 있다면, 이는 당초 방역재원을 마련하여 질병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 때문에, 희망자에 한한 계약체결 방식보다는 의무가입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1.2. 징수 및 운영주체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부담금의 경우 부과·징수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이며, 관리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음. 해외의 방역비 부과·징수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점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련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사례가 있었음.
- 또한, 부담금의 이용과 관리 주체가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동일한 반면,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의 경우에는 관리 및 이용주체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는 크게 중앙정부, 지자체,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별도 기관의 경우 기존의 존재하는 기관에 방역 부담금의 부과·징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방역 부담금을 운영하는 2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실성을 고려하면, 방역 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할 것임.

- 부담금을 시·도와 같은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할 경우, 부과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부과대상 선정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이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가축 이동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정부에서 부담금을 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에 따른 부과대상을 선정하여 징수를 하므로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음. 아울러, 부담금이 중앙정부 소속으로 귀속될 경우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직접 거출하기에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비롯하여, 중앙하달식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실행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별도의 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경우, ‘축산물수입 이익금’을 기금의 주원으로 하는 축산발전기금과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부담금이 중앙정부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과대상이 조합원이 아닐 경우 거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제3의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방역 부담금 부과·징수·운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는 만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여, 방역비 지출 감소, 가축방역 효율 등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음.
- 반면, 설립까지의 기간이 다른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임. 또한, 설립을 위해서 관련 조직 간의 업무조정 및 이관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표 6-1〉 가축질병 방역비 부과·징수 주체별 장단점

역할	장·단점	시·도	농협	중앙정부	별도설립/지정
부과 · 징수	장점	- 명확한 부과대상 - 부담금 거출 용이	- 중앙정부입장에서 축산발 전기금과 통합 관리가 가 능하여 관리 용이	- 무임승차 방지 - 효율적인 예산 집행 가능	- 전문성 확보 가능 - 가축방역 효율성 등 실행 력 제고
	단점	- 부과대상이 행정구역으로 구분 - 거출점이 반드시 권역 내 존재	- 부과대상이 조합원이 아 닐 경우 거출 어려움	- 복잡한 행정절차 - 중앙하달 방식에 따른 낮 은 실행력	- 설립 시 상대적으로 장기 간 소요 - 조직 간 업무조정 및 이 관에 조율 필요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 부담금 도입 시 부과·징수 방안, 귀속 주체 결정에 대해서는 각각 2가지 상황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부과·징수 주체를 시·도와 같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는 상황과, 거출된 부담금을 중앙정부에 귀속하거나 지자체의 회계 계정으로 편입하는 상황임.

〈표 6-2〉 방역 부담금 도입 시 운영방안(안)

부과·징수방법		귀속주체	
1안	2안	A안	B안
지자체 수행	별도 기관 수행	지자체 귀속	중앙정부 귀속

-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나눈 A안의 경우, 부담금이 지자체의 회계 계정에 귀속되는 것임. 이 안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한다면 지자체의 조례 제정만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편리성이 장점이 될 수 있음.
- 또한, 지역 내에서 거출된 기금은 해당 지역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원인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여, 상대적으로 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행정구역 점점 지역의 방역에 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은 단점이라 할 수 있음.
- B안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축방역에 대한 형평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무임승차의 문제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구역 점점의 책임 전가 문제 등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앙정부로 부담금을 귀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개편·추가하는 과정이 A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이 단점임.
-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지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귀속주체도 지자체로 결정(1-A안)하여 행정의 편리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반면, 별도 기관에서 부과·징수 할 경우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운영(2-B안)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함.

### 1.3. 기금조성 대상의 범위

-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담금 부과 원칙에는 원인유발자 책임의 원칙과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가축질병에 관한 한, 질병 전파와 발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에 방역비용을 부담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정책 수혜자 부담의 원칙은 적용이 가능함.
-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농가 및 관련 업계 부담(농가 외에 사료, 동물약품 납품 업체, 유업체, 계열업체(도축장 등)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더 넓게 보면, 간접수혜 대상으로 2차 축산물가공업체, 가공축산물 포장 및 운송업체, 도소매와 같은 축산물판매업체 등도 있음.



- 여기에서, 질병 전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계를 고려한다면, 간접수혜대상들은 농가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자체 방역 대상에서도 제외된 업체(또는 단계)들임.
- 따라서 간접 수혜대상은 부담금 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 때, 거출의 대상자별 거출금액은 수혜의 정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농가와 관련업체의 거출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정부에서도 매칭펀드를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임. 거출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중앙정부, 지자체, 농가, 관련업계(동물약품, 사료 등)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형태로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 2. 방역부담금제도 도입 방안

### 2.1. 대안 시나리오 작성 시 고려사항과 대안 시나리오 도출

- 가축방역부담금을 거출하려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누가 할 것인가 임. 국내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누구라는 주체는 징수주체와 운영주체 그리고 기금 관리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국내 여타 부담금의 경우,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는 대부분 동일하며, 징수주체도 같은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거출된 부과금을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기금의 귀속은 어디가 될 것인가하는 관리주체도 중요함.
- 다만,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의 배경이 특히 지자체 방역비용 부족한 만큼, 징수와 이용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징수주체로서의 지자체를 제외하면, 관리주체가 지자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 될 것인지를 문제와 기금의 귀속이 지자체 특별회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게 됨.
- 따라서, 관리주체로써 1) 시·도와 같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2) 별도의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리할 것인지를 방안으로 요약됨.
- 또한, 기금 귀속의 주체로써 1) 거출된 부담금을 중앙정부에 귀속할지 아니면, 2) 지자체의 특별 회계 계정으로 편입할 것인지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제시된 관리주체와 기금귀속 주체별 대안들의 현실적 조합을 시나리오 작성의 기준으로 삼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가능함.
- 먼저 1안과 A안의 조합임. 즉, 지자체가 가축방역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금은 지자체 특별회계로 귀속하는 조합임. 이를 이하에서는 I안이라 함.
- 두 번째, 중앙정부가 가축방역부담금(기금)을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부과·징수(징수는 지자체에서 하여도 무방),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2안과 B안의 조합(2-B)임. 이를 이하에서는 II안이라 함.
- 요약하면, 1-A안(I안) 즉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지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귀속주체도 지자체로 결정하여 행정의 편리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2-B안(II안) 즉, 별도 기관에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는 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2.2. 대안의 비교-지자체/지자체(I안) vs 중앙정부/별도기관(II안)

### 2.2.1. 징수 주체 및 운영·관리주체

#### 가. 방역부담금 주체별 운영 체계 및 특징

##### □ I안

- I안인 지자체 징수, 기금의 지자체 특별회계 귀속의 안의 경우 징수주체는 지자체(광역시·도)이며, 기금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귀속됨. 따라서, 기존의 지자체 회계부서에 방역부담금(기금)을 관리하는 기능만 추가하면 되며, 기금 충당을 위한 징수도 지자체 방역관련 부서에서 산출하여 징수를 하면 됨.

##### □ II안

- II안인 기금의 관리는 중앙이 하고, 부담금(기금)의 징수 및 귀속은 별도의 중앙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는 안임.
- 이 경우,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중앙정부의 장인 농식품부 장관이 하거나 징수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여 지자체가 사용하면 됨. 하지만, 관리기관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따라 또한 별도로 설립할 것인지 기존 조직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짐.
- 관련 조직을 지정 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즉, 축종별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임. 또한, 전담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때에는 기능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현실성을 고려할 때 검역본부를 지정하지만, 검역본부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

을 방역본부에 위탁한다는 대안과 농협중앙회의 축발기금 관리 조직에서 관리하되,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따라서 II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관리의 대안은 기금관리 3개안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병행 사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병행 사용), 농협중앙회를 가능한 조직으로 볼 수 있음. 이 외에 거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축종별 자조금관리 위원회도 현실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존 조직에서 지정 가능한 기관으로는 축산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정부지원 특수법인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외에 기금 거출이 용이한 축종별 자조금위원회도 지정의 대상으로 고려함. 이들 기관을 지정할 때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아래 표임.
- 농협중앙회를 기금운영 주체로 지정할 경우, 축발기금과 함께 관리 가능하고, 농협이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 상 비조합원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농협이 생산자 조직이라는 특성 상 부담금을 내는 농가와 기금을 거출하는 농협 간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음.
- 한편, 비용측면에서 보면, 농협중앙회의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적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반면, 기금 거출 및 운영 경험이 있으며, 관련 부서도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물적 비용 측면에서는 타 대안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기관으로 기금 등을 거출하거나 관리해 본 경험이 없어, 기금 관리 기능을 정부 지원 특수법인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위

임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이하에서는 방역본부가 관리한다는 가정 하에서 위에서와 같은 카테고리  
리로 장단점과 비용측면을 검토함.
- 방역본부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 전문성과 정부 지원 특수법인인 방역본  
부의 조직을 이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반면, 전염병 발생이 드문 지역 또는 농가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  
행력은 다소 떨어지며, 방역본부가 아직은 전국적인 조직이 기금을 거출하  
고 관리하기에는 충분한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부각됨.
- 비용측면에서 인적비용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물적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축종별 자조금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를 위해 조직을 만  
들지 않아도 되고, 자조금에 방역부담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자금 운영의 편의성이 있음. 또한, 기존의 축종별 자조금 관리조직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축종별로 각기 자조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공동 소요비용에 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방역에 대한 전문성 결여,  
농가외의 거출대상에 대한 거출액 배분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이 안의 경우, 인적비용측면에서는 다른 3개 안의 중간 정도이며, 물적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기금관리 및 운영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전문성 확보나  
사업에 대한 특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유사 조직과의 충돌 문

제와 설립·절차·비용 등의 문제, 인력 확보 문제 등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음.

- 설립 시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데, 이 때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음.
- 인적비용측면에서는 신규설립시 매우 불리하지만, 기존 조직 중에서 지정하는 경우, 다른 대안에 비해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판단됨. 물적비용 측면에서는 설립 시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또한 지정 시 어느 기관이 지정되고 어떠한 기능을 갖출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판단할 수 없음.

〈표 6-3〉 가축방역부담금 운영기관 지정이 가능한 조직의 장단점 비교

		농협	방역본부	자조금	별도설립/지정
장점		- 축발기금과 함께 관리 가능 - 전국적 조직 보유	- 전문성 있음 - 기존 조직(가방본부) 이용 가능	- 자금운영 편의성 - 기존 조직 이용 가능	- 전문성 확보 및 특화가능
단점		- 비조합원 관리 한계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와 농협 간의 마찰 우려	- 실행력 떨어짐 - 전국조직 미보유 → 추가 관리인력 필요	- 공동 소요비용 협력 어려움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외 거출대상 거출액 배분 어려움	- 기존 조직과의 충돌, 설립·절차·비용 문제, 인력 확보 문제 등 - 설립 시 법 개정 절차 복잡
비용	인적	매우 불리 (과다 소요)	다소 유리	보통	- 설립시 매우 불리 - 지정시 보통
	물적	유리	다소 불리	유리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름.

#### 나. 대안별 운영체계와 특징

- 방역부담금 주체별 운영 체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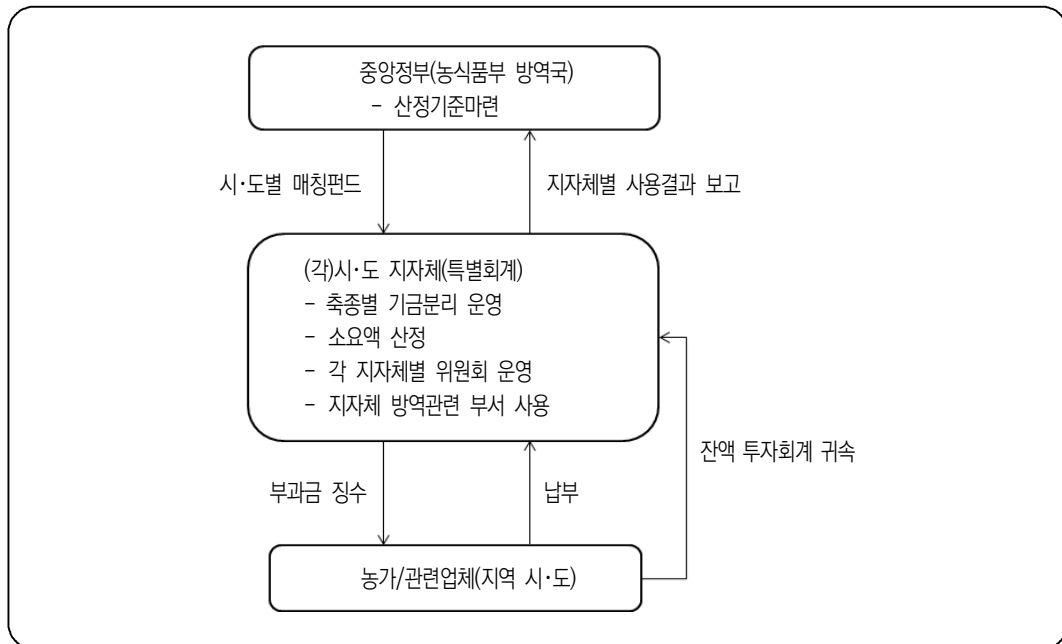
#### □ 1안

-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국에서는 부담금 수준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함. 각 지자체는 해당 산정기준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할 대상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 및 관련업체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을 개별 단위로 산출하도록 함.

- 각 시·도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자자체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징수된 금액을 관리토록 함. 이 때 특별회계에서는 축종별로 분리하여 기금을 관리토록 함.
-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자체 단위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함. 지출이 승인되면 지자체의 방역담당부서(방역과 또는 방역계)에서 해당 방역항목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용하게 됨.
- 지출이 완료되면 정해진 시기에 중앙부서에 지출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별로 징수된 액만큼(50:50) 매칭펀드를 하여 각 지자체 기금에 귀속함.

〈그림 6-1〉 1안의 부담금 관리체계도



- 각 지자체는 부담금 납부 의무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해당 기금의 해당 축종 항목에 귀속토록 함.
- 만일 축종별로 모자란 비용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타 축종의 부담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차용된 자금은 반드시 추후 변제하여야 하도록 함.
- I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1) 지자체가 징수 주체이면서 운영 주체임.
  - 2) 지자체별로 특별회계(관리 주체)를 만들어 관리함.
  - 3) 지자체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4) 기존 각 지자체의 특별회계에 부담금 관련 기금을 독립적으로 또한 축종별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함.
  - 5) 지역 실정에 부합된 예산 집행이 가능함.
  - 6) 집행의 신속성, 효율성, 지역 특화성 등의 제고가 가능함. 그러나 지역 간 형평성 고려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지역 특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예산의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할 우려가 있음.
  - 7)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의 사태 발생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 납부 의무와 관련된 법적 조항 신설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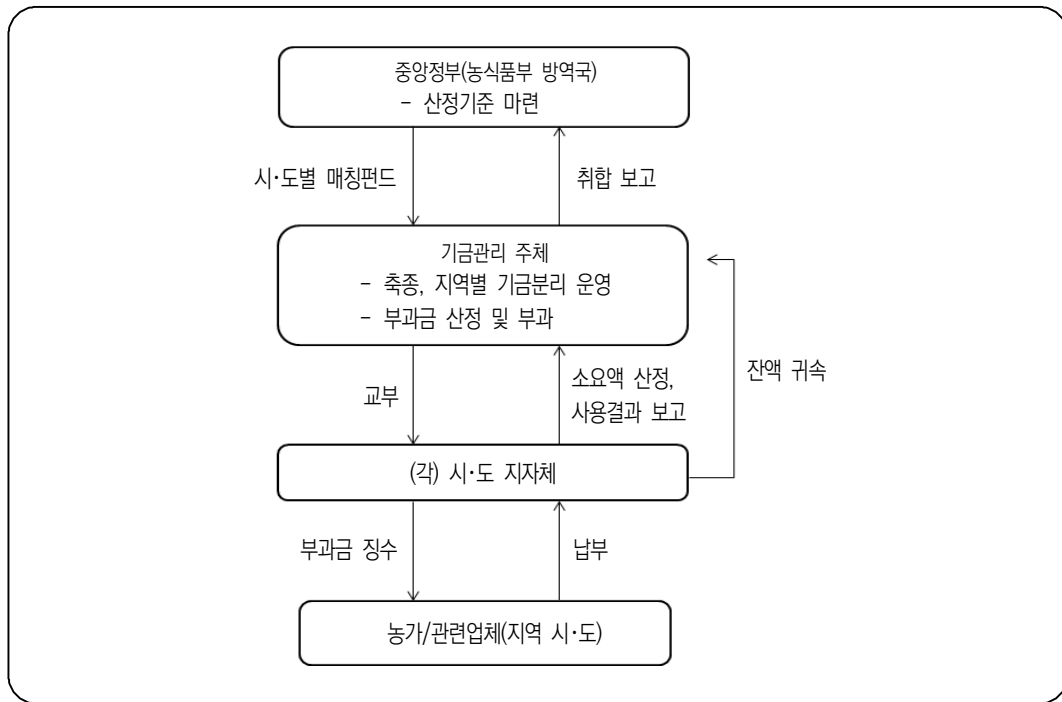
## □ II안

- II안에서도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국의 역할은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기금관리주체에 시달하도록 하며, 기금 관리주체는 기금의 사용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며 이를 통제하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축종별, 지역별 기금을 분리 운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부과금 산정기준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 이 때 각 지자체는 기금관리주체에 각 지자체의 소요액을 산정하여 신청하고, 기금관리주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지원액을 교부함.
- 사용 결과도 기금관리주체에 보고하도록 함. 징수된 분담금과 사용 후 남은 금액은 기금관리주체의 관리 회계에 귀속됨.
- 부담금은, 앞의 I안에서와 같이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납부 대상자들 역시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면, 지자체는 이를 곧바로 관리주체의 관리 회계로 귀속토록 함.
- II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1) 기금관리주체는 별도 설립 또는 지정할 필요가 있음.
  - 2) 분담금의 징수는 지자체에서 하지만, 기금의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인 기금관리주체에서 함.
  - 3) 기금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중앙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4) II안의 경우, 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지는 않으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예산의 오남용 방지도 가능하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음.
  - 5) 중앙통제방식이므로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6)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의 사태 발생 시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단점이 있음. 이에 납부 의무와 관련된 법적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그림 6-2〉 II안의 부담금 관리체계도



## 2.2.2. 징수 및 사용절차

### □ I안

- I 안의 경우,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국에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면,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농가 가축소유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납부액을 산출하여,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 및 납부 대상 관련 기관에 부과를 명령하여 징수고지서를 발송함.
- 이에 대해 각 부과대상자는 각자 해당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함. 납부된 금액은 지자체의 추종별 분리된 특별 회계에 귀속됨.
- 지자체가 방역비용 산정에 의해 소요비용을 신청하게 되면, 각 지자체는 관

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부담금 관리위원회의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 기금을 사용하게 됨.

- 지자체 단위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한편, II안의 경우 운영하는 중앙 단위 위원회의 경우에는 반대로 투명성 확보는 가능하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 측면에서 떨어짐.
- 이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I안과 II안 모두 의사결정주체인 위원회를 상시 조직으로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사용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뒤의 사용절차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토록 함.

#### □ II안

- II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국에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부과액을 산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함.
- 지자체는 부과금 징수를 위해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고, 납부 대상자인 농가 또는 가축소유자 및 관련업체는 지자체에 부담금을 납부함.
- 납부된 금액은 곧바로 기금관리주체 계정에 귀속됨. 중앙정부는 매칭 펀드를 제공함.

### 2.2.3. 관련 법률의 제·개정

- 각 안은 그 특성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할 법률이나 내용이 달라질 것임.

## □ I안

- 먼저 I안의 경우, 지자체가 징수하고 지자체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므로, 지자체 조례로 운영이 가능함. 단, 부담금 또는 기금관리를 위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저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법률적 설계가 필요함.
- 또한, 지자체 조례의 모범이 되는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담야 두어야 할 것임.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과금 징수 가능 조항 신설
  - 부과금 징수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부과금의 관리 및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임.
-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각 지자체는 제정·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금제도 사례 참고).

## □ II안

- II안 역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에 맞도록 가축방역부담금 제도의 법률적 설계가 필요함. 또한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가축방역부담금 기금 관리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부과금의 징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지자체 징수 대행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2.3. 공통사항

### 2.3.1. 부과 요건

#### □ 납부의무 대상자의 범위

- 앞장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 및 사료업체, 동물약품 생산 및 납품업체, 유업체, 계열업체, 도축장 등을 포함함.
- 가축방역부담금이라는 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기금을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는 것임. 때문에 이들이 농가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자체 방역 대상에서도 제외된 업체(또는 단계)들이므로, 이들을 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금 납부에 대한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가축방역부담금은 기금을 한우 및 육우, 젖소, 돼지, 육계 및 토종닭, 산란계, 오리 등등 축종별로 분리 운영하여야 함. 이는 축종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임.
- 또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무임승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과 대상을 정해 가능한 한 빠짐없이 납부하도록 하는 점이 중요함.

#### □ 부과 대상 질병의 범위

- 부과대상 질병도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가도 결정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제5장의 요율을 산정하여 보았지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밀한 계산을 필요로 함. 요율 계산 결과에 따라 대상 질병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정밀한 요율 산정 결과를 참고로 결정할 일이지만, 구체역이나 AI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구제역과 AI 관련 비용부터 시작하고, 후에 제도가 안정되게 되면,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축종별 대상 전염병 질병의 방역관련 활동비용에 근거하여 축종별 총 거출금액을 산정하며, 거출대상자별 거출금액은 수혜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2.3.2. 부과 기준

#### □ 납부액 산정의 기준

- 관련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산출 시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느냐의 문제가 발생됨. 사료 및 동물약품 생산 및 납품업체의 경우 생산비 중 사료비, 동물약품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이 가능할 것임.
  - 보다 정직한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 축산물생산비 통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납부액 산정에 있어 주체별로 부담을 일정 금액으로 할지, 아니면 판매액 비율로 할지 또한, 그 범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여야 함.
- 육계나 오리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업체라고 한다면, 계열업체가 전부 부담할지 아니면, 생산단계를 사육부터 도계단계까지로 가정하여, 도계까지의 판매 총수입에서 도계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켜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함.
-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젓소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인 농가는 농가 판매가격에 대해 부담하면 되지만, 유업체는 농가판매가격과 공장도 가격 차액에 대해 부담하도록 함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함.

- 산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축의 소유자는 농가이므로 계란에 대해서는 젓소의 사례에서 결정된 바의 원칙에 따라 준용하면 될 것임.
- 한우와 돼지의 경우에는 계열화되어 있다면, 가금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지만, 계열화가 아닌 경우에는 농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부담하도록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도축장에 대한 부담금 수준 산정에도 적용기준의 문제가 발생됨. 도축장의 경우 임대축이 많음. 이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수익을 가지고 산정해야 함.
- 일본의 경우에는 전부 포함하고 일정액으로 하고 있음. 네덜란드 동물건강기금의 경우에도 모두 포함하며, 일정액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각 단계별로 ‘매출액’ 또는 ‘매출액 - 비용 (차액)’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판매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기본 통계의 미흡으로 계산에 어려움이 있음, 보완 방법으로 단계별 비용 수익 조사가 필요함.
- 앞 장 요율산출 부분에서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나 자료가 부족하여 전체 방역비용을 크게 평시방역비용,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보상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를 축종별로 구분하여 이용함.
  - 축종별 비용 구분을 위해 4개 도 지역의 축종별 방역비용 지출 실태를 조사하여 4개 도(충남, 충북, 전북, 경북) 지역 평균을 적용함.

□ 납부액 부과 방식

- 납부해야 할 가축방역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직접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임. 다만, 육계나 오리, 돼지처럼 축종에 따라서는 직접 부과방식 이외에 계열업체를 통해 부과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는 있음.
- 도축장이나 사료 및 동물약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이 축종은 번식부문과 비육부문으로 나누어 짐. 생산단계에서 농가나 가축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경우,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비육부문에 대한 부과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육부문에 비해 번식부문에 대한 부과 방식에 따라서는 무임승차의 가능성 등 불평등한 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젖소의 경우 거출의 편이성을 위해 유업체 정산 시 거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자가 가공시설을 갖추고 유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금 부과가 어려워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상존함.

〈표 6-4〉 축종별 부담금 부과방법

		농가	도축	사료, 동물약품
한육우		• 농가 직접부과 •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젖소	1) 유업체 정산 시 거출 방법 - 거출이 편리하나, 무임승차 가능성 상존 2) 농가 직접 부과		
	돼지	• 농가 직접부과 •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		
기금	육계 /오리	1) 계열업체 정산 시 거출(계열업체 소속일 경우) 2) 농가 직접 부과(계열업체 소속 아닐 경우)	GP - 직접부과 도매(중개)업자 - 직접부과	
	산란계	• 농가 직접부과		



-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육하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돼지나 가금처럼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것인지(일본에서는 농장형과 기업형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 아래 표임.
- 마릿수를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기존의 축산업등록제 D/B를 이용할 수 있고,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가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확한 마릿수를 신고하느냐가 중요함.
- 하지만, 축산업 등록제 D/B는 현행화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사육마릿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때문에 본 제도 도입에 앞서 사육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육마릿수가 곧바로 현행화 되지 못하면, 농가별로 산정함에 있어 실제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금액으로 산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축산업등록제 데이터 현행화 체계를 먼저 구축하여야 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와 공통적인 산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이 또한 본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 농가 규모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규모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임. 즉, 정확한 마릿수 등록에 있어 다소 현행화 정도가 떨어지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이 방법은 부과가 편리하고, 사육단계별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방역활동 수준에 따라 부과요율에 대한 고려도 가능해짐. 일례로, 일본의 경우 돼지, 육계에 대해 농가형과 기업형으로 차별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이 방식은 구간 내 농장 거출액에 불평등의 소지가 있고, 방역활동과 규모의 상관성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표 6-5〉 부담금 부과 기준별 장·단점

	마릿수 기준 부과	규모계층 부과
장점	· 형평성 유지 가능	· 비교적 정확도 떨어져도 적용 가능 · 부과의 편리성 · 사육단계별 기준 불필요 · 방역활동 수준에 따라 부과율 고려 가능. 예) 일본의 경우 돼지, 육계 농가형과 기업형으로 차별 부과
단점	· 정확한 마릿수 파악 어려움 · 사육단계별 기준 필요 - 농가별 산정, 각기 다른 금액 필요	· 구간 내 농장 거출액 불평등 소지 · 방역활동과 규모 상관성 관계 불명확

- 농가 규모계층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는 경우, 부과금 산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통계조사 및 발표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농가 규모별 차등 부과방식을 선택한다면, 이 또한 제도 도입의 선결과제가 될 것임.
- 즉, 한육우의 경우, 현재의 가축통계 조사 및 발표체계에서는 번식부문과 비육부문이 규모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음. 규모계층별 차등부과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구분체계를 요함.
- 젓소나 돼지의 경우에도 규모계층 구분에 있어, 부담금의 차등적 산정을 위해서는 규모계층 구분에 적당한 지표가 필요하며, 이 기준을 적용한 통계조사 및 발표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예를 들면, 고용노동 인력 수 기준으로 계층구분을 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통계 조사 및 발표체계를 고용 인력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규모와 고용인력 간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한 후, 규모계층 구분에 적합하도록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육계나 오리, 산란계와 같은 가금 사육통계도 현행과 같이 2,000수 또는 3,000수 미만은 조사하지 않는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며, 대규모 사육 구분 기준도 보다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검토 결과, 한육우, 젓소, 돼지는 마리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6-6〉 부담금 부과 기준별 적용방법 및 보완사항

마리당	규모계층		
	1) 신고두수 2) 거래두수(전(병아리 입식), 후(출하)) - 이력제 물량체크 방법 준용 (거래명세서상 도축두수) ↓ 농가별로 부과	한육우	번식 <sup>29</sup>
비육			두당 기준으로 해서 농가 부담금 환산
젓소		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	
돼지		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	
육계		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오리 <sup>31</sup>		2천 수 이상 / 2천 수 미만: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산란계		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 2.3.3. 방역부담금 산정 대상 방역비용의 범위

- 방역비용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평시방역비용이 있는가 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감염 가축의 검사, 살처분 및 매몰, 살처분 보상금 관련 비용 등 다양한 비용들이 수반됨.

29 번식 경우 수년에 1회 출하하기 때문에 두당 부담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일 필요 있음. 단점으로 번식 부문과 비육 부문과의 부담금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30 규모가 크면 질병발생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규모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가축노동, 고용노동력(상고) 숫자에 따라 규모 계층 구분이 필요함. 해결을 위해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함.

31 오리의 생산비 조사통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담의 대상으로 할 세부 방역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됨. 즉, 상시 방역비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살처분 보상비용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등의 보상 범위에 대한 문제임.
- 우리나라 전체 가축방역비용의 80% 이상이 살처분 보상비용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부담 절감을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까지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로는 도입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 여기에서는 가축방역 비용을 ① 상시방역비용, ② 상시방역비용 + 발생 시 살처분 보상비용을 제외한 비용, ③ 상시방역비용 + 살처분 보상비를 포함한 발생 시 총 비용 등 3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함. 이에 대해서는 이후 요율 산정 시 적용될 것임.

### 2.3.4. 감면요건

-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제도와 네덜란드의 동물건강기금제도의 경우 감면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도입 시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만일 차등부과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소한의 감면 요건으로 1) 최근 몇 년 간 발병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농가가 부담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성실하게 방역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농가 등에 감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2.3.6. 사용·용도

- 가축방역부담금이 징수되면,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결정 사항임. 기금의 사용 용도는 앞의 ‘방역부담금 산정 대상 방역비용의 범위’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짐.
- 즉, 기금의 사용 용도를 산정할 때, 먼저 어느 범위까지 고려하여 부담액을 산출하였느냐하는 문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임. 이에 앞서서처럼, 1) 시나리오별 평시방역 비용 + 2) 발생 시 살처분(살처분·매몰) 보상금 제외 방역비용 + 3) 살처분 보상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단, 각 비용 항목의 세부항목 중 소독, 차단 방역 이외의 방역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전문가 자문비, 전문가 출장 및 조사비, 검사 등 담당자 출장 조사비, 추가 검사비용,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 등처럼, 현재 주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세부항목의 비용까지 기금의 용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참고로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경우, 평시 방역 비용 항목에 추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있음.
- 가축방역관련 각종 조사 연구비용의 경우, 현재의 축종별 자조금과 용도 중복이 우려됨.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축산 자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각종 조사연구비용도 용도로 지정하여도 중복 지출의 우려는 없음.

### 2.3.7. 거출방법

- 앞의 납부액 부과 방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과금의 거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방식은 1) 농가대상 + 관련 업체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대상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짐.
- 만일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산정 시 기준 시점을 연평균 또는 분기별 평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마련하면 될 것임.
  - 연평균으로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는 축산업 등록체계 현행화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출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2) 자조금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출점을 가능한 한 활용하고, 자동 거출이 어려운 축종이나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 방식의 장점은 징수가 수월하다는 데 있지만, 무임승차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자조금 없는 축종도 존재하며, 징수범위가 지자체를 벗어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축종에 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가능한 한 무임승차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간 거출 대상의 범위를 하나하나 지정하여 주면 될 것임.
- 하지만, 대상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방식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지자체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I 안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3.8. 사용절차

- 지자체의 방역담당관이 지자체장에게 소요액을 신청하는 작업에서 절차가 시작될 것임. 이 때 축종별, 용도별로 지정되어야 함. II안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위원회에 지출 심의를 요청함.
-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1) 평시 방역의 경우 매뉴얼 통해 지자체장이 결재하여, 농식품부 등 중앙에는 결산보고만 실시하고, 2) 질병 발생 시에는 보상금 등과 같이 즉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 후 지출하도록 함.
- 아울러, 즉시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장 허가 하에 지출하도록 함.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선 조치 후 사후적으로 위원에 심의 후 충당하는 방법을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금 운영 매뉴얼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금의 사용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지자체장이 소요금액을 기금관리주체(I 안에서는 지자체, II안에서는 중앙의 전담기관)에 신청함. 이때 축종별로 용도를 지정하여야 할 것임.
- 신청된 금액은 기금관리주체에서 조직하여 운영하는 가축방역기금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심의를 함. 심의하여 승인된 금액은 귀속주체에서 각 지자체로 예산을 배분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지자체가 사용함. 사용 후 잔액 발생 시 기금에 귀속시킴.
- 사용 후 관리주체에 결과보고를 하고, 관리주체는 중앙정부에 취합·보고함.
- 중앙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금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 관리 받게 됨.

## 2.4. 대안별 요약

○ 이상의 논의를 카테고리별로 요약하여 비교한 것이 아래 표임.

〈표 6-7〉 가축방역부담금 주체별 대안의 부담금 운용방식 카테고리별 비교

	I안(지자체-지자체)	II안(중앙/별도-중앙)																								
징수 주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농식품부 장관) : 지자체에 징수 위임 가능																								
운영 및 관리 주체	지방정부, 지자체 특별회계 귀속	<p>운영주체: 지자체(징수, 기금 사용)                      관리주체: 별도기관(설립/지정)                      지정 가능한 기관: 농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축종별 자조금위원회</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농협</th> <th>방역본부</th> <th>자조금</th> <th>별도설립</th> </tr> </thead> <tbody> <tr> <td>장점</td> <td>- 축발기금과 함께 관리 가능 - 전국적 기관 보유</td> <td>- 전문성 있음 - 가방본부 조직 이용 가능</td> <td>- 자금 운영 편의성 - 기존조직 이용 가능</td> <td>- 전문성 확보 및 특화가능</td> </tr> <tr> <td>단점</td> <td>- 비조합원 관리 한계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와 농협 간 마찰 우려</td> <td>- 실행력 떨어짐 - 전국조직 미보유 → 추가 관리인력 필요</td> <td>- 공동 소요비용 협력 어려움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 외 거출대상 거출액 배분 어려움</td> <td>- 기존 조직과의 충돌, 설립·절차·비용 문제, 인력 확보 문제 등 - 설립 시 법 개정 절차 복잡</td> </tr> <tr> <td rowspan="2">비용</td> <td>인적</td> <td>매우 불리 (과다 소요)</td> <td>다소 유리</td> <td>보통</td> </tr> <tr> <td>물적</td> <td>유리</td> <td>다소 불리</td> <td>유리</td> </tr> </tbody> </table> <p>○ 조직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                      - 축종별 기금 관리, 전문성                      - 지정/설립 시 기능 신설 필요</p> <p>○ 현실성을 고려할 때 1안 : 검역본부(방역본부에 위탁 가능), 2안 : 농협(축발기금에서 별도 계정 관리) 제시 가능</p> <p>○ 중앙정부(기금관리 3개안 → 검역본부, 방역본부, 농협)</p>		농협	방역본부	자조금	별도설립	장점	- 축발기금과 함께 관리 가능 - 전국적 기관 보유	- 전문성 있음 - 가방본부 조직 이용 가능	- 자금 운영 편의성 - 기존조직 이용 가능	- 전문성 확보 및 특화가능	단점	- 비조합원 관리 한계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와 농협 간 마찰 우려	- 실행력 떨어짐 - 전국조직 미보유 → 추가 관리인력 필요	- 공동 소요비용 협력 어려움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 외 거출대상 거출액 배분 어려움	- 기존 조직과의 충돌, 설립·절차·비용 문제, 인력 확보 문제 등 - 설립 시 법 개정 절차 복잡	비용	인적	매우 불리 (과다 소요)	다소 유리	보통	물적	유리	다소 불리	유리
	농협	방역본부	자조금	별도설립																						
장점	- 축발기금과 함께 관리 가능 - 전국적 기관 보유	- 전문성 있음 - 가방본부 조직 이용 가능	- 자금 운영 편의성 - 기존조직 이용 가능	- 전문성 확보 및 특화가능																						
단점	- 비조합원 관리 한계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와 농협 간 마찰 우려	- 실행력 떨어짐 - 전국조직 미보유 → 추가 관리인력 필요	- 공동 소요비용 협력 어려움 - 방역 전문성 결여 - 농가 외 거출대상 거출액 배분 어려움	- 기존 조직과의 충돌, 설립·절차·비용 문제, 인력 확보 문제 등 - 설립 시 법 개정 절차 복잡																						
비용	인적	매우 불리 (과다 소요)	다소 유리	보통																						
	물적	유리	다소 불리	유리																						
부과 요율	보고서내 관련 부분 참조																									



	I안(지자체-지자체)	II안(중앙/별도-중앙)
징수 절차	<p>* 중앙정부 기준 제시</p> <p>중앙정부(농식품부 방역국) - 산정기준 마련</p> <p>시·도별 매칭펀드</p> <p>지자체별 사용결과 보고</p> <p>(각)시·도 지자체(특별회계) - 축종별 기금분리 운영 - 소요액 산정 - 각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 지자체 방역관련 부서 사용</p> <p>부과금 징수</p> <p>납부</p> <p>잔액 투자회계 귀속</p> <p>농가/관련업체(지역 시·도)</p> <p>→ 지자체 농가 및 관련 기관 납부액 산출 → 농가 및 관련 기관 부과 명령 → 납부 → 지자체 특별 회계</p> <p>○ 보완방법 (1) 위원회 - 장점 : 의사결정신속 / 단점 : 투명성 확보 어려움 (2) 중앙정부 : 장점 : 투명성 확보 가능 / 단점 : 의사결정 지연 / 보완방법 : 의사결정 위원회 상시 운영 등</p>	<p>중앙정부 기준제시 → 기금관리주체 부과액 산정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 납부고 지시 발행 → 농가/업체 납부 → 기금관리주체 계정에 귀속(← 중앙정부 매칭 펀드)</p> <p>중앙정부(농식품부 방역국) - 산정기준 마련</p> <p>시·도별 매칭펀드</p> <p>취합 보고</p> <p>기금관리 주체 - 축종, 지역별 기금분리 운영 - 부과금 산정 및 부과</p> <p>교부</p> <p>소요액 산정, 사용결과 보고</p> <p>잔액 귀속</p> <p>(각) 시·도 지자체</p> <p>부과금 징수</p> <p>납부</p> <p>농가/관련업체(지역 시·도)</p>
법률	<p>부담금관리기본법 가전법 지자체 조례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 부과금 징수 가능 조항 신설 - 부과금 징수를 지자체에 위임 가능 - 부과금 관리 및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위임 가능 → 부담금 관리 기본법 내용 준용 → 각 지자체는 제정·운용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 가능 예) 일본 사례 참고</p>	<p>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도 기금 관리법 제정 필요 - 지자체 징수 대항 관련조항 포함</p>

(계속)

	I안(지자체-지자체)	II안(중앙/별도-중앙)																								
부과 요건	<p><input type="checkbox"/> 납부의무 대상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금 납부자가 그 수혜자가 되는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 및 관련 업체라는 의미임. 수혜 업체에는 사료업체, 동물약품 생산 및 납품업체, 유업체, 계열업체, 도축장 등이 포함될 수 있음.</li> <li>○ 가축방역부담금은 기금을 한우 및 육우, 젖소, 돼지, 육계 및 토종닭, 산란계, 오리 등등 축종별로 분리 운영하여야 함. 이는 축종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임.</li> </ul> <p><input type="checkbox"/> 부과 대상 질병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 초기에는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구제역과 SI 관련 비용부터 시작하고, 후에 제도가 안정되게 되면, 대상 질병을 확대</li> </ul>																									
부과 기준	<p><input type="checkbox"/> 납부액 산정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 및 동물약품업체의 경우 생산비 중 사료비, 동물약품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 가능</li> <li>-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 축산물생산비 통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도축장의 경우 임도축이 많아, 수수료와 별도로 수익을 가지고 산정</li> <li>○ 각 단계별로 '매출액' 또는 '매출액 - 비용 (차액)'을 기준으로 부담액 결정 가능</li> <li>- 유통단계별 비용 수익 조사 필요</li> </ul> <p><input type="checkbox"/> 납부액 부과 방식</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농가</th> <th>도축</th> <th>사료, 동물약품</th> </tr> </thead> <tbody> <tr> <td>한육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li>•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li> </ul> </td> <td rowspan="3">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td> <td rowspan="3">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td> </tr> <tr> <td>젖소</td> <td>                     1) 유업체 정산 시 거출 방법 - 거출이 편리하나, 무임승차 가능성 상존                      2) 농가 직접 부과                 </td> </tr> <tr> <td>돼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li>•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li> </ul> </td> </tr> <tr> <td rowspan="2">가금</td> <td>                     육계 /오리                      1) 계열업체 정산 시 거출(계열업체 소속일 경우)                      2) 농가 직접 부과(계열업체 소속 아닐 경우)                 </td> <td rowspan="2">                     GP - 직접부과                      도매(중개)업자 - 직접부과                 </td> <td></td> </tr> <tr> <td>산란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ul> </td> </tr> </tbody> </table> <p>○ 제도 도입에 앞서 사육단계별로 기준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업등록제 데이터 현행화 체계 우선 구축, 명확한 기준 제시와 공통적인 산출 매뉴얼 작성보급 필요</li> <li>○ 농가 규모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울 것으로 보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마릿수 기준 부과</th> <th>규모계층 부과</th> </tr> </thead> <tbody> <tr> <td>장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유지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정확도 떨어져도 적용 가능</li> <li>• 부과의 편리성</li> <li>• 사육단계별 기준 불필요</li> <li>• 방역활동 수준에 따라 부과율을 고려 가능. 예) 일본의 경우 돼지, 육계 농가형과 기업형으로 차별 부과</li> </ul> </td> </tr> </tbody> </table>		농가	도축	사료, 동물약품	한육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li>•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li> </ul>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젖소	1) 유업체 정산 시 거출 방법 - 거출이 편리하나, 무임승차 가능성 상존 2) 농가 직접 부과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li>•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li> </ul>	가금	육계 /오리 1) 계열업체 정산 시 거출(계열업체 소속일 경우) 2) 농가 직접 부과(계열업체 소속 아닐 경우)	GP - 직접부과 도매(중개)업자 - 직접부과		산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ul>		마릿수 기준 부과	규모계층 부과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유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정확도 떨어져도 적용 가능</li> <li>• 부과의 편리성</li> <li>• 사육단계별 기준 불필요</li> <li>• 방역활동 수준에 따라 부과율을 고려 가능. 예) 일본의 경우 돼지, 육계 농가형과 기업형으로 차별 부과</li> </ul>	
	농가	도축	사료, 동물약품																							
한육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li>•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li> </ul>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일정기간, 일정액 직접 부과																							
젖소	1) 유업체 정산 시 거출 방법 - 거출이 편리하나, 무임승차 가능성 상존 2) 농가 직접 부과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li>• 번식, 비육 부문에서 무임승차 가능성 있기에, 불평등 발생 가능성 존재</li> </ul>																									
가금	육계 /오리 1) 계열업체 정산 시 거출(계열업체 소속일 경우) 2) 농가 직접 부과(계열업체 소속 아닐 경우)	GP - 직접부과 도매(중개)업자 - 직접부과																								
	산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접부과</li> </ul>																							
	마릿수 기준 부과	규모계층 부과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평성 유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정확도 떨어져도 적용 가능</li> <li>• 부과의 편리성</li> <li>• 사육단계별 기준 불필요</li> <li>• 방역활동 수준에 따라 부과율을 고려 가능. 예) 일본의 경우 돼지, 육계 농가형과 기업형으로 차별 부과</li> </ul>																								

(계속)

	Ⅰ안(지자체-지자체)	Ⅱ안(중앙/별도-중앙)																			
부과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마릿수 기준 부과</th> <th>규모계층 부과</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한 마릿수 파악 어려움</li> <li>사육단계별 기준 필요</li> <li>- 농가별 산정, 각기 다른 금액 필요</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간 내 농장 거출액 불평등 소지</li> <li>방역활동과 규모 상관성 관계 불명확</li> </ul> </td> </tr> </tbody> </table>	마릿수 기준 부과	규모계층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한 마릿수 파악 어려움</li> <li>사육단계별 기준 필요</li> <li>- 농가별 산정, 각기 다른 금액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간 내 농장 거출액 불평등 소지</li> <li>방역활동과 규모 상관성 관계 불명확</li> </ul>															
	마릿수 기준 부과	규모계층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확한 마릿수 파악 어려움</li> <li>사육단계별 기준 필요</li> <li>- 농가별 산정, 각기 다른 금액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간 내 농장 거출액 불평등 소지</li> <li>방역활동과 규모 상관성 관계 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 규모계층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는 경우, 통계조사 및 발표체계 보완 필요</li> <li>- 한육우: 번식과 비육부문 규모별 세분</li> <li>- 젖소, 돼지: 규모계층 세분</li> <li>- 가금: 소규모 조사 포함 및 대규모 계층 세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마리당</th> <th colspan="2">규모계층</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1) 신고두수                      2) 거래두수(전(병아리 입식), 후(출하))                      - 이력제 물량체크 방법 준용 (거래명세서상 도축두수)                      ↓                      농가별로 부과                 </td> <td rowspan="2">한육우</td> <td>번식</td> <td>부업 30두 미만, 전업 30두 이상(추가 세분 필요)</td> </tr> <tr> <td>비육</td> <td>두당 기준으로 해서 농가 부담금 환산</td> </tr> <tr> <td>젖소</td> <td>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td> </tr> <tr> <td>돼지</td> <td>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td> </tr> <tr> <td>육계</td> <td>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td> </tr> <tr> <td>오리</td> <td>2천 수 이상 / 2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td> </tr> <tr> <td>산란계</td> <td>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td> </tr> </tbody> </table>	마리당	규모계층		1) 신고두수 2) 거래두수(전(병아리 입식), 후(출하)) - 이력제 물량체크 방법 준용 (거래명세서상 도축두수) ↓ 농가별로 부과	한육우	번식	부업 30두 미만, 전업 30두 이상(추가 세분 필요)	비육	두당 기준으로 해서 농가 부담금 환산	젖소	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	돼지	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	육계	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오리	2천 수 이상 / 2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산란계	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마리당	규모계층																				
1) 신고두수 2) 거래두수(전(병아리 입식), 후(출하)) - 이력제 물량체크 방법 준용 (거래명세서상 도축두수) ↓ 농가별로 부과	한육우	번식	부업 30두 미만, 전업 30두 이상(추가 세분 필요)																		
		비육	두당 기준으로 해서 농가 부담금 환산																		
	젖소	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																			
	돼지	한육우 고용노동(상고) 인력 기준 준용																			
	육계	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오리	2천 수 이상 / 2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산란계	3천 수 이상 / 3천 수 미만 : 통계청 생산비 규모 구분에 따라 계층 구분																				
산정 대상 방역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방역 비용을 ① 상시방역비용, ② 상시방역비용 + 발생 시 살처분 보상비용을 제외한 비용, ③ 상시방역비용 + 살처분 보상비를 포함한 발생시 총 비용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요율 계산</li> </ul>																			
감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일 차등부과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소한의 감면 요건으로 1) 최근 몇 년 간 발병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농가가 부담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성실하게 방역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농가 등에 감면해 주는 방안 고려</li> </ul>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나리오별 평시방역 비용 + 2) 발생 시 살처분(살처분·매물) 보상금 제외 방역 비용 + 3) 살처분 보상금으로 나누어 검토</li> <li>○ 단, 각 비용 항목의 세부항목 중 소독, 차단 방역 이외의 방역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 필요</li> <li>- 일본 가축방역호조기금의 경우, 평시 방역 비용 항목에 추가하여 용도 지정</li> <li>- 조사 연구비용은 자조금과 용도중복 우려</li> </ul>																			
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농가대상 + 관련 업체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li> <li>- 대상이 확실, 부과 시기에 따라 편차 존재</li> <li>○ 보완방법: 산정 시 기준 시점을 연평균 또는 분기별 평균 적용</li> <li>○ 2) 자조금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출점을 가능한 한 활용, 자동 거출이 어려운 축종이나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li> <li>- 징수 수월, 무임승차 발생 가능성, 자조금 없는 축종 존재, 징수범위가 지자체를 벗어날 경우 절차 복잡</li> <li>- 보완 방법으로 모든 축종 자조금 도입, 무임승차방지 별도 대책 마련, 각 지자체간 거출 대상 범위 하나하나 지정.</li> </ul>																			
사용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장이 소요금액을 기금관리주체(Ⅰ안에서는 지자체, Ⅱ안에서는 중앙의 전담기관에 신청(축종별로 용도 지정 → 가축 방역기금운영위원회(가칭) 심의 → 승인된 금액 귀속주체에서 각 지자체로 예산 배분 → 지자체 사용, 잔액 기금 귀속 → 사용후 결과 관리주체 보고 → 관리주체는 중앙정부에 취합·보고 → 중앙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금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 관리 받음.</li> </ul>																			

### 3. 가축방역 부담금 제도 도입 로드맵

#### 3.1.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의 선결 요건

- 앞의 두 가지 대안에 대해 검토 한 결과 중,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요건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도입 결정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 1)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 적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정책 수혜자 부담의 원칙은 적용 가능
  - 2) 부담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조항을 확보하여야 함.
  - 3) 이용 가능한 통계 조사를 보완하여야 함. 특히, 축산물 유통 조사 통계를, 단계별 비용 및 수익 등과 같은 조사를 추가하여야 함.
  - 4) 기존 통계 조사 발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함.
    - 축산물 생산비 통계, 축산업 등록제 현행화체계 보완 및 재구축,
  - 5) 전담기관 별도 설립 시 별도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구비 및 예산 확보 및 설립을 추진하여야 함.
    - 복잡한 설립 절차 수행
    - 기능 신설을 위한 조치 필요
  - 6)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준비하여야 함.
    - I 안: 지자체 조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법률적 설계, 모법이 되는 가전법 등 개정
    - II 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법률적 설계, 모법이 되는 가전법 등 개정, 별도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관리법 별도 제정
  - 7) 사육규모 계층별 부과 방식 채택의 경우, 사육단계별 계층 구분 기준 마련이 필요함.
  - 8)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부담금 산출 기준 매뉴얼이 구비되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9) 농가 규모계층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는 경우, 부과금 산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통계조사 및 발표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및 발표 기준 사육규모 세분화
    - 고용인력 등 고려한 사육규모 구분
- 가축방역부담금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시범적 운영 전·후 단계에서 준비 또는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징수주체, 운영주체, 기금관리주체를 선정하여야 함.
  - 2) 운영주체 설립 또는 지정 및 기금 귀속 회계를 수립하여야 함.
  - 3) 농가 또는 가축소유자, 징수 대상 관련 업체 등 기금조성 대상 범위(납부의무대상자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 4) 부과 대상 사육규모 등을 결정하고, 부과대상 질병의 범위도 결정하여야 함.
  - 5) 축종별 기금 분리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6) 각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 7) 가축방역부담금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운영을 준비하여야 함.
    - I 안의 경우 지자체 단위로 구성하고, II안의 경우 중앙단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점 보완을 위해 위원회를 상시 조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할 필요가 있음.
  - 8) 부담금 산정 기준 마련(농식품부 방역국)
  - 9) 부담금 산정 대상 방역비용의 범위 및 기금의 사용 용도 결정
  - 10) 부담금 감면 요건의 결정
  - 11) 자조금을 통한 거출방법 선택 시 모든 가축에 대한 자조금 설치
    -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 강구

### 3.2.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 로드맵

-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을 함에 있어서 로드맵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함.

〈그림 6-3〉 가축방역부담금 도입 로드맵



- 아직은 도입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납부 대상자들의 반발이 적어야 한다는 여건도 중요함. 이외에도, 부담금이 조세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공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함.
- 공평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핵심임. 때문에 통계를 이용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조세적 성격의 징수라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야 함.
-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 초기에는 대상 질병을 FMD와 AI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역 살처분 정책이 발생농가만 살처분으로 축소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살처분의 범위가 축소된다면, 부담 수준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임. 부담 수준이 줄어들면 대상 질병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제7장

---

## 요약 및 제언

### □ 서론

- 가축전염병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로 인한 정부 지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음. 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충북도에서는 방역세 도입을 건의한 바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가축질병 발생 시 필요비용 충당과 사육제한 이행농가 지원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재원(특히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가축방역사업 전반에 걸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방역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방역재원(지방재원) 확충방법

-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농가(가축 소유자)에게 원인유발자 책임의 원칙과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방역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러나 가축질병 전파와 발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에 방역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방역 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세의 부과 형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민의 수용성, 투명성,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일반세보다는 목적세, 목적세 중에서도 부담금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피구세(Pigouvian Tax)는 소비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제어하기 위하여 고안됨.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비용 만큼(외부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임.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조세의 금전지급의무임.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함.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있는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함.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 방역재원 확충을 위한 부담금은 2001년 제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함. 아울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또한,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검증 받아야 함.

#### □ 방역부담금 관련 해외사례: 네덜란드 동물건강기금

- 네덜란드의 동물건강기금은 정부와 민간이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고 있음. 동물건강기금의 재원은 크게 생산위원회, 네덜란드 정부, EU 3곳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축질병 발생 시 생산위원회가 기금에서 지원해야하는 금액

상한선은 축종과 질병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매 5년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설정함. 이 때 평시 예방적 방역활동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비용을 구분하여 설정함.

- 기금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가축소유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것으로, 신속한 보상을 통해 성실한 조기질병 신고와 방역협조를 유도하기 위함. 동물건강기금은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 통제와 관련된 비용(살처분 비용)과 평상시 질병 모니터링 및 방역비용도 지원함.
- 가축 소유주가 지불하는 부담금(levy)은 농장의 크기, 가축 마릿수 규모, 축산물 생산량, 축종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개인의 방역 노력 정도에 따른 차등 부담은 없음.

#### □ 방역부담금 관련 해외사례: 일본 가축방역호조제도

-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중앙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방역정책을 일부 보완하는 정책 중 하나임. 가축방역호조금제도는 계약한 농가에 한하여 보상하며, 농가가 정부에서 정하는 부담금(호조금)을 지자체 지정단체(현공모단체 또는 현단체)에 납부함. 농가가 납부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농축산업진흥기구에 같은 금액을 매칭펀드(50 : 50)하며, 이로 마련된 기금은 중앙축산회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체제임.
- 이 기금은 가축방역 및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재개 자금의 일부로 사용(경영지원호조금)하게 됨. 이를 위해 가축방역호조금제도에서는 가축방역호조금 지원사업과 가축방역호조금인정사업 그리고 가축방역호조 등 추진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 사업참가자는 돼지(멧돼지 포함) 및 닭에 대해서는 기업형과 농가형의 구분에 따라 계약구분을 설정함.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납

부액은 가축의 종류(축종 및 같은 축종 내 성장단계별)마다 호조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함. 지원단가는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여 보정한 뒤, 정해진 공식에 의해 산정함.

- 일본의 가축방역호조기금은 가축방역 및 살처분 매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도 경영지원호조금에도 지원함. 사용절차 즉, 보조금 지원 절차는 1)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임. 공모단체 및 현 단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과 2) 보조금의 대략적 계산 절차, 3) 사업실시 절차, 4) 사업실시 보고 절차가 있음.
- 일본에서는 가축방역호조금제도 이외에 방역비용 부족 시 마을단위(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음. 큐슈 사가현 태랑정의 조례가 그 예임.

#### □ 국내 사례

-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운용중인 부담금 수는 총 90개 중 가축방역부담금제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부담금을 집중 검토함. 검토 결과, 부과·징수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이며, 관리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음. 가축방역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이 필요함.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 부과·징수 및 관리기관으로는 크게 중앙정부, 지자체,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축종별 요율산출

- 방역비용 요율추정은 지자체 방역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만을 고려하여 진행하였고, ① 평시 방역 비용만 고려, ② 살처분 보상금만 고려, ③ 평시방역비용을 제외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질병 발병 시 소요되

는 제반비용 고려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음.

- 축종별 방역비용 효율은 가금류와 우제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축종별 비중 산출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지방비 내역을 활용하였음. 평시 방역비용에 대한 축종별 부담금 규모와 축종별 효율 추정을 위하여 2017년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지방비 780억 원을 기준 금액으로 설정함.
- 가금류 AI살처분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소요된 살처분 보상금 2,306억 원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제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액 454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중 20%를 지방비로 산정함.
-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에 대하여 가금류는 2,923억 원, 우제류는 638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중 20%를 지방비로 산정하였음. 마리당 부담금 산출을 위하여 2015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상시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가구당 부담금 산출을 위해 가구당 사육마릿수를 활용함.
- 분석결과, 지자체 평시 방역비용에 대한 부담금 규모나 마리당 부담액, 가구당 부담액에 대해서는 축종별로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평시 지자체 방역비용의 50%를 부담할 경우, 축종별 부담금 규모는 1,969백만 원(오리)~15,864백만 원(돼지)으로 분석되었음. 사육 마릿수를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액은 43.3(산란계)~5,745원(젓소)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사육 마릿수를 고려한 가구당 부담금액은 149천원 (한육우)~3,258천원(오리)으로 분석되었음. 회전율을 고려하면, 산란계와 한육우, 젓소의 마리당 부담금은 변동이 없지만, 육계와 오리, 돼지의 경우에는 각각 346.7원, 947.6원,

4,737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구당 부담금액 역시 산란계와 한육우, 젓소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지만, 육계와 오리, 돼지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분석과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에 대한 가금류, 특히 산란계와 오리의 부담액 규모나 마리당 부담액, 가구당 부담액이 부담 비중이 관계없이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부담할 경우, 가금류는 1,110백만 원(육계)~20,194백만 원(산란계)으로 분석되었음. 우제류는 130백만 원(젓소)~3,565백만 원(돼지)으로 분석되었음. 사육 마릿수를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액은 산란계 416.20원, 오리 211.32원, 육계 11.23원, 돼지 483.80원, 젓소 401.79원 한육우 352.55원으로 분석되었음. 가구당 부담금은 산란계 25,804천원, 오리 2,906천원, 육계 606천원, 돼지 1,148천원, 젓소 25천원, 한육우 11천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회전율을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과 가구당 부담금은 육계, 오리, 돼지에서 회전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과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50%를 부담할 경우, 가금류는 1,407백만 원(육계)~25,600백만 원(산란계)으로 분석되었음. 우제류는 183백만 원(젓소)~5,009백만 원(돼지)으로 분석되었음. 마리당 부담금액은 산란계 527.62원, 오리 267.89원, 육계 14.24원, 돼지 679.9원, 젓소 564.6원 한육우 495.4원으로 분석되었음.
- 가구당 부담금은 산란계 25,804천원, 오리 2,906천원, 육계 606천원, 돼지 1,148천원, 젓소 25천원, 한육우 11천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회전율을 고려한 마리당 부담금과 가구당 부담금은 육계, 오리, 돼지에서 회전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자체 방역비용 재원 확충을 위한 방역부담금 운용은 각 축종별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축종별로 각 시나리오별 부담금 규모나 마리당 부담금, 가구당 부담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한 생산자와 이해 관계자의 방역비용 분담에 대한 접근은 평시방역,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보상금을 포함한 제반비용과 축종별 주요 질병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단기, 중·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방역부담금 도입 시 운영방안

- 방역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기금을 거출하는 방식으로 희망자에 한한 계약체결 방식보다는 의무가입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현실성을 고려하면, 방역 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할 것임.
- 귀속주체를 기준으로한 A안과 B안과 운영주체에 따른 1안과 2안의 조합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지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귀속주체도 지자체로 결정(1-A안=Ⅰ안)하여 행정의 편리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반면, 별도 기관에서 부과·징수 할 경우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운영(2-B안=Ⅱ안)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부과금 부과 대상으로 농가 및 관련 업계 부담(농가 외에 사료, 동물약품 납품 업체, 유업체, 계열업체(도축장 등)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징수절차로 Ⅰ안의 경우, \* 중앙정부 기준 제시 → 지자체 농가 및 관련 기관 납부액 산출 → 농가 및 관련 기관 부과 명령 → 납부 → 지자체 특별 회계의 순으로 제시함. Ⅰ안의 단점 보완방법으로 의사결정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

는 방법을 제시함. II안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기준제시 → 기금관리주체 부과액 산정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 납부고지서 발행 → 농가/업체 납부 → 기금관리주체 계정에 귀속(← 중앙정부 매칭 펀드)를 제시함.

- 법률체계 구축에 있어, I 안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준수와 가전법 개정, 각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에는 부과금 징수 가능 조항 신설, 부과금 징수를 지자체에 위임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부과금 관리 및 운영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II안에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준수와 더불어 별도 기금 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지자체 징수 대행 관련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I 안과 II안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부과 기준 중 납부의무 대상자의 범위는 농가 또는 가축의 소유자 및 관련 업체인데, 관련 업체의 범위에는 사료업체, 동물약품 생산 및 납품업체, 유업체, 계열업체, 도축장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가축방역부담금은 기금을 한우 및 육우, 젖소, 돼지, 육계 및 토종닭, 산란계, 오리 등등 축종별로 분리 운영하여야 함. 부과 대상 질병의 범위로 도입 초기에는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구제역과 AI 관련 비용부터 시작하고, 후에 제도가 안정되게 되면,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부과기준 중 납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료 및 동물약품업체의 경우 생산비 중 사료비, 동물약품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기존 축산물생산비 통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도축장의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수익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과, 각 단계별로 ‘매출액’ 또는 ‘매출액 - 비용 (차액)’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단계별 비용 수익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함.
- 납부액 부과 방식으로는 육계, 오리와 같이 대부분 계열화된 경우 계열업체

를 통해 부과하는 방법과 직접 부과하는 방법을 병행하며, 소와 돼지의 경우에는 마리당으로 직접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함. 관련업계에 대한 징수 방법은 일정 기간에 규모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제도 도입에 앞서 사육단계별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부과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행화 체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와 공통적인 산출 매뉴얼의 작성보급이 필요함. 농가 규모계 층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울 것으로 보임. 농가 규모 계층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는 경우, 통계조사 및 발표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산정 대상 방역비용으로는, 가축방역 비용을 ① 상시방역비용, ② 상시방역비용 + 발생 시 살처분 보상비용을 제외한 비용, ③ 상시방역비용 + 살처분 보상비를 포함한 발생시 총 비용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요율을 계산하여 적용할 것을 제시함. 이는 기금의 용도와도 연계됨.
- 거출방법으로 1) 농가대상 + 관련 업체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2) 자조금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출점을 가능한 한 활용, 자동 거출이 어려운 축종이나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것을 제시함. 이 때 1)의 경우 보완방법으로 부과금 산정 시 기준 시점을 연평균 또는 분기별 평균을 적용할 것과 2)의 경우 보완 방법으로 모든 축종에 자조금을 도입하고, 무임승차방지 별도 대책 마련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간 거출 대상 범위를 하나하나 지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 사용 절차로 지자체장이 소요금액을 기금관리주체(I 안에서는 지자체, II 안에서는 중앙의 전담기관에 신청(축종별로 용도 지정→ 가축방역기금운영위원회(가칭) 심의) → 승인된 금액 귀속주체에서 각 지자체로 예산 배분 → 지자체 사용, 잔액 기금 귀속 → 사용후 결과 관리주체 보고 → 관리주체는 중



양정부에 취합·보고 → 중앙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금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 관리 받는 절차를 제시함.

- 가축방역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으로, 제도 도입의 선결요건과 로드맵을 제시함. 그 첫 단계로,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의 선결 요건을 도입 여건조성단계와 도입 전후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 도입 결정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하는 단계 즉 여건조성단계에서는 1)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 적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2) 부담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조항을 확보하여야 함. 3) 이용 가능한 통계 조사를 보완하여야 하며, 4) 기존 통계 조사 발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함. 5) 전담기관 별도 설립 시 별도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구비 및 예산 확보 및 설립을 추진하여야 함. 6) 부담금기본법에 맞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준비하여야 함. 7) 사육규모 계층별 부과 방식 채택의 경우, 사육단계별 계층 구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8)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부담금 산출 기준 매뉴얼이 구비되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9) 농가 규모계층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는 경우, 부과금 산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통계조사 및 발표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축방역부담금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시범적 운영 전·후 단계에서 준비 또는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징수주체, 운영주체, 기금관리주체를 선정하여야 함. 2) 운영주체 설립 또는 지정 및 기금 귀속 회계를 수립하여야 함. 3) 농가 또는 가축소유자, 징수 대상 관련 업체 등 기금조성 대상 범위(납부의무대상자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4) 부과 대상 사육 규모 등을 결정하고, 부과대상 질병의 범위도 결정하여야 함. 5) 축종별 기금 분리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6) 각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7) 가축방역부담금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운영을 준비하여야 함. 8) 농식품부 방역국은 부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9) 부담금 산정 대상 방역비용의 범위 및 기금의 사용 용도, 10) 부담금 감면 요건을 결정하여야 함. 11) 자조금을 통한 거출방법 선택 시 모든 가축에 대한 자조금을 설치하

고,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가축방역부담금 제도 도입을 함에 있어서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아직은 도입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므로, 납부 대상자들의 반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공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함.
- 공평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계를 이용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조세적 성격의 징수라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야 함.
  - 공평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계를 이용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조세적 성격의 징수라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야 함.
-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로드맵과 같이 제도 및 법 체계가 정비된다 하여도, 부담금 납부 대상자들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움. 무엇보다도 생산자 등과 같은 납부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조건임.
  - 연구 진행 과정 중 납부 대상자 및 정부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자문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아직은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납부 대상자들이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납부 대상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함.



## 부록 1

# 검토 대상 유사 부담금별 운용 현황

###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관	- 시·도, 시·군·구	
징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귀속 주체	- 중앙정부: 농지관리기금(100%)	
징수관련 법률	- 농지법 제38조,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47조	
부과목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부과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30%(상한금액: 5만원/㎡)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	
가산금 등	가산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법 제38조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증가산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법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강제징수 절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감면요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시기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2016년 1월 21일부터 사전납부제 시행)	
납부기한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함	
사용용도	-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li> <li>-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li> <li>-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li> <li>-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li> <li>-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li> <li>-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li> <li>-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li> <li>-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li> <li>-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li> <li>-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li> </ul>
기타	

## 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과 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징수 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귀속 주체	- 중앙정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100%)		
징수관련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부과목적	- WTO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부과대상	-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수입차익금의 범위(국내가격-수입가격)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입찰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가산금 등	- 해당없음		
감면요건	- 해당없음		
부과시기	- 양허관세 추진 신청 시		
납부기한	- 추천 신청 이전 납입 완료		
사용용도	<table border="1"> <tr> <td>융자 또는 대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li> <li>- 농산물의 수출촉진</li> <li>-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li> <li>-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li> <li>-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li> </ul> </td> </tr> </table>	융자 또는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li> <li>- 농산물의 수출촉진</li> <li>-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li> <li>-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li> <li>-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li> </ul>
융자 또는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li> <li>- 농산물의 수출촉진</li> <li>-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li> <li>-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li> <li>-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li> </ul>		

(계속)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출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 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련 -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 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 기관	- 농협경제지주
징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귀속 주체	- 중앙정부: 축산발전기금(100%)
징수관련 법률	- 축산법 제45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48조, 농식품부 고시 제2015-25호
부과목적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재원 조성
부과대상	- 축산물수입자 - 양허관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입찰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수입권구매: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공매시 납입키로 표시한 금액(원/kg) · 외화획득용: 수입금액(CIF+관세)×2%×환율
가산금 등	-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면요건	- 해당없음
부과시기	- 수입 추천받기 전
납부기한	- 수입 추천받기 전까지
사용용도	-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 가축 위생 및 방역 -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타	

#### 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과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속 주체	- 중앙정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100%)
징수관련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2조 - 농식품부 고시 제2016-169호, 제2016-170호, 제2016-171호, 제2016-172호, 제2016-173호, 제2016-174호, 제2016-175호, 제2016-176호, 제2015-166호, 제2016-65호,
부과목적	- FTA 관세율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협정에 정한 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입금을 징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납부토록 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제고 등을 위한 제원으로 활용
부과대상	- FTA체결에 따라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을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물량 - 유장, 오렌지, 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참깨 등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농축산물 관세할당 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공매입찰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 건별로 최고가 공매입찰 방식으로 결정 - 공매납입금=관세율차해당액*×환율×납입비율(%) =국내외가격차액**×TRQ×납입비율(%) * 관세율차해당액: 수입단가×TRQ물량×관세율차(%) ** 국내외 가격차액: (수입가격×환율)-국내 도매가격
가산금 등	- 해당없음
감면요건	- 해당없음
부과시기	- 해당없음
납부기한	- 해당없음
사용용도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기금 용도로 함
기타	

### 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 기관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군포·용인·하남·문경시)	
징수 기관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군포·용인·하남·문경시)	
귀속 주체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	
징수관련 법률	- 지방자치법 제138조	
부과목적	-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	
부과대상	- 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얻는 경우 -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 공공시설 수익자(급수공사신청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 부과(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가산금 등	- 해당없음	
감면요건	- (100%) 공설공용 급수시설(인천광역시, 군포·용인·하남·문경시)	
부과시기	인천광역시	- 승인시
	군포시	- 급수공사 신청 시
	하남시	- 급수공사 승인 시
	용인시	- 급수공사 신청 시
	문경시	- 부담금 부과 사유 발생 시(급수공사 신청 시) 즉시
납부기한	인천광역시	- 통지한날로부터 20일 이내
	군포시	- 통지한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남시	- 해당없음
	용인시	- 급수 공사비와 동시 납부
	문경시	-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
사용용도	-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사용	
기타		



###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부과 기관	-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전남 구례군	
징수 기관	-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전남 구례군	
귀속 주체	-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1.5%), 공공기관 등: 보문·안동·중문관광단지(98.5%)	
징수관련 법률	- 관광진흥법 제6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 - (보문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 입주계약규정 제11조,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징수규정 - (안동관광단지) 관광단지입주계약규정 제11조,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징수내규 - (중문관광단지) 공사 사규 - (지리산온천관광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 지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부과목적	- 관광지 지원시설 등의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동부담토록 함으로써 관광지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또는 관리하기 위함	
부과대상	-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등의 건설 및 유지·관리·보수사업 - 관광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광지 등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입주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경우: 지원시설의 이용자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 · 이용자분담금=[지원시설의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 제외)+보상비(감정비 포함)]×(이용자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한 비율) -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의 경우: 업체별 매출액,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 (보문관광단지, 안동관광단지) 2005년 전문영역기관에 의뢰한 징수기준에 의거(입주업체 동의) 시설별 매출액 기준율, 부지면적 기준액, 건축연면적 기준액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합산 적용 · (중문관광단지)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경우 지원시설 건설비용(공사비 및 보상비 합산)을 기준 · (지리산온천관광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 지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월별 사용량 검침 후 산출된 금액을 부과	
가산금 등	가산금	- (보문관광단지, 안동관광단지)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15% - (중문관광단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지리산온천관광지) 연체기간 1개월까지 3%
	증가산금	- (중문관광단지) 매 2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공동시설 분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지리산온천관광지) 건당 30만원 이상시 연체기간 1개월 초과 60개월까지 1.2%
	강제징수 절차	- (지리산온천관광지)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감면요건	- (보문관광단지, 안동관광단지) (적정 수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의 심한 손실을 받은 때, 기타 공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한 때(휴업 또는 기업 부도 등)	
부과시기	- (보문관광단지, 안동관광단지) 영업개시일부터 분담금 적용 - (중문관광단지) 전년도분 연간 분담금을 익년 상반기내 입주자에게 서면 통보 후 고지서 발부(6월) - (지리산온천관광지) 매년 2월말까지 확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통보, 고지서 부과	
납부기한	- (보문관광단지, 안동관광단지) 연 2회(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 - (중문관광단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단, 분할납부 제외) - (지리산온천관광지)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용도	- 관광지 지원시설 등의 건설 및 유지·관리·보수	
기타		

##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관	- 충남 보령시, 전남 구례군
징수 기관	- 충남 보령시, 전남 구례군
귀속 주체	- 공공기관 등: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지리산관광지
징수관련 법률	- 관광진흥법 제6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
부과목적	- 관광지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 관련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관광지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부과대상	-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경우: 지원시설의 이용자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 · 원인자부담금=[지원시설의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 제외)+보상비(감정비 포함)]×(이용자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한 비율)
가산금 등	- 해당없음
감면요건	- 해당없음
부과시기	- 해당없음
납부기한	- 해당없음
사용용도	-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행위) 비용
기타	

## 8. 산업통산자원부: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부과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징수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귀속 주체	- 중앙정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100%)	
징수관련 법률	-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 -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산업부 고시 제2015-238호)	
부과목적	- 광해방지사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 광해발생 직접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지속가능한 광산개발 도모	
부과대상	- 광해방지의무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때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신고), 허가기간 재연장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때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자부담율(30%) - 산림(토지)복구사업: 복구비 예치 통치액×요율(30~60%)	
가산금 등	가산금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단,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강제징수 절차	- 국세체납지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면요건	- (100%)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부과시기	- 매년 1월 15일까지(단,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동 계획의 승인 통지 시)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용도	-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 휴지광산·폐광산의 광해방지사설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연구·기술개발·교육 - 국내·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운영 - 가행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응자 -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기타		

## 9. 환경부: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기관	- 시·도				
징수 기관	- 시·도				
귀속 주체	-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100%)				
징수관련 법률	-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12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부과목적	-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함				
부과대상	-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등 -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자: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등 - 기타 샘물 개발자: 기타 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등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샘물 등 취수량 및 먹는샘물 등 수입량을 기준으로 1㎡당 단가 적용 ·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등: 2,200원/㎡ ·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등: 2,200원/㎡ ·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등: 2,200/㎡ - 기타샘물 개발자 및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 샘물 등 취수량				
가산금 등	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			
	강제징수 절차	-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면요건 (감면율 100%)	- 수출하는 것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해 취수한 샘물 등				
부과시기	- 영업기간중(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납부기한	-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				
사용용도	-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의 지원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 그 밖의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지원				
기타	- 먹는샘물 및 기타샘물 부과율의 단계적 조정('10~'12)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먹는샘물(원/㎡)	4,150	3,400	2,800	
기타샘물(원/㎡)	1,300	1,600	1,900		

## 10. 환경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기관	- 시·군·구	
징수 기관	- 시·군·구	
귀속 주체	- 중앙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100%)	
징수관련 법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부과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과대상	- 시설물 소유자(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시설물: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 -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부과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시설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로계수×지역계수 - (시설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가산금 등	가산금	-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은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징수(100분의 3)
	강제징수 절차	-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면요건 (100%)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 -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경도장애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증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1대	
부과시기	- 반기별 1회	
납부기한	- (상반기) 9.16~9.30 - (하반기) 익년 3.16~3.31	
사용용도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용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기타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15.7.1)되어 '16년부터는 과년도 체납액만 징수	

## 11. 국토교통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기관	- 각 시장(구청장 및 군수 위임 가능)	
징수 기관	- 각 시장(구청장 및 군수 위임 가능)	
귀속 주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98.8%), 일반회계(1.2%)	
징수관련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9조	
부과목적	- 교통유발의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여 대중교통개선사업 등 재원 확보 교통량 감축 유도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 단, 주택단지 내 시설물은 3,000㎡ 이상의 시설물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가산금 등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0분의 3
	강제징수 절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감면요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li> <li>- 주거용 건물</li> <li>- 주차장 및 차고</li> <li>-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li> <li>-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li> <li>- 종교시설</li> <li>-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한정)</li> <li>-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li> <li>-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인 시설물</li> <li>-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li>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li> <li>- 도서관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문화시설</li> <li>- 보훈병원</li>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li> <li>- 동·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 제외)</li> <li>-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li> <li>-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li> <li>-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li> <li>-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 부속시설물 중 통행료 징수(관리)시설 및 휴게시설(대기실)</li> <li>-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li> <li>-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li> <li>-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li> <li>-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미사용 기간의 해당 금액)</li> <li>- 교통량감축계획 이행 시설물(감축활동별 경감률)</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50%)</li> <li>- 시장이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최대 100%)</li> </ul>	
부과시기	- 매년 납부기간 시작 5일 전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li> <li>-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li> <li>-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li> <li>-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li> <li>-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li> </ul>	
기타		

## 12.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 기관	- 시·도
징수 기관	- 시·도
귀속 주체	- 광역지자체 일반회계(17%), 기초지자체 일반회계(83%)
징수관련 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부과목적	-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li> <li>-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li> <li>-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li> <li>-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li> <li>- 「수산업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li> <li>-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li> <li>-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li> <li>-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li> <li>-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li> <li>-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li> </ul>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ha×10만원</li> <li>·정치망어업·해조류·복합양식어업: ha×3만원</li> </ul> </li> <li>-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어업·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근해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 톤 당 5천원</li> </ul> </li> <li>·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해선망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 당 3만원</li> </ul> </li> <li>·뱃줄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뿔목식종묘생산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당 10만원</li> </ul> </li> </ul> </li> <li>-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 당 500만원(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은 200만원)</li> </ul> </li> </ul>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 당 5만원</li> </ul> </li> <li>-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 제외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300만원</li> <li>·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250만원</li> <li>·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200만원</li> </ul> </li> <li>-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톤당 50만원</li> </ul> </li> <li>- 법 제52조제2항에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행위 허가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당 500만원</li> </ul> </li> <li>-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 당 21만 6천원</li> </ul> </li> </ul>
가산금	-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따라 징수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피해복구지원을 받은 어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미만 시 30% 감면(어선의 경우 반파)</li> <li>·50% 이상 시 50% 감면(어선의 경우 전파)</li> </ul> </li> </ul>
부과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사용용도	- 인공어초, 수산종묘매입방류, 소규모바다목장, 시범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기타	



## 13. 방제분담금

부과 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징수 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귀속 주체	- 공공기관 등: 해양환경관리공단(100%)
징수관련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부과목적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전국 규모의 해양오염사고 뿐 아니라 해역별 소형 해양 오염사고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정방제능력을 확보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부과대상	-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 할 해역을 운항하는 총 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 소유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기름저장시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유류수량 ·유류수량(리터)÷100×8.66원: 100리터 당 8.66원 - (유조선) 매 입항시 ·내항선: 항차시마다 4.77원/톤 ·외항선: 항차시마다 14.32원/톤 - (유조선 이외의 선박) 매 입항시 ·내항선: 항차시마다 2.48원/톤 ·외항선: 항차시마다 7.45원/톤
가산금 등	- 해당없음
감면요건	- 선박의 소유자가 연간 10회 입항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미리 납부하고 10회를 초과하여 입항한 경우(100%) -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 수리목적으로 입항 또는 통과하는 선박의 경우(80%) -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의 경우(100%) - 한국전력공사의 비상용 기름(75%)
부과시기	- (선박) 매 입항시 - (기름저장시설)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 매월 1~15일 분담금: 익월 5일까지 - 매월 16~말일 분담금: 익월 20일까지
사용용도	-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타	

##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징수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귀속 주체	- 중앙정부: 방송통신발전기금(100%)	
징수관련 법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 -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산정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징수 부과 등에 관한사항	
부과목적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함 · 방송통신분야 연구개발, 양질의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지원, 공익·공공 목적 운영의 방송통신지원 등을 통해 해당분야의 시장실패 완화와 긍정적 외부효과 견인 ※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기반한 공적책임 달성을 위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 부과·징수	
부과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종합유선: 1.0~2.3%, 위성: 1.33%) · 전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징수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은 방송서비스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 1.0% ·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징수율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결산상 영업이익(TV: 13%, 데이터: 10%) ·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징수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KBS: 2.87%, EBS: 1.54%, MBC·SBS: 4.3%, 지역방송: 1.15~2.3%, 라디오: 0.15~2.3%, 지상파DMB: 0.15~0.3%) ·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징수율 ⇒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에 따라 사업자별 차등 적용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0.5% ·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징수율 ⇒ 부칙에 따라 2016년도부터 징수	
가산금 등	가산금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 부과
	증가산금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절차	- (강제징수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계속)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 또는 경감)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li> <li>-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100%)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과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li> <li>-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100%)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총액 이상인 사업자</li> <li>-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총액 미만인 사업자</li> <li>- CMB대구수성방송 54.27%, CCS충북방송 17.96%, 금강방송 4.37%, 하나방송 8.63%, KCTV무문방송 17.1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6.80%, OBS경인TV 96.44%, YTN라디오 91.34%, 불교방송 20.89%, 평화방송 48.66%, 기독교방송 26.47%, 한국DMB 88.41%, JTBC 83.60%, 채널A 28.50%, 매일방송 8.84%, 조선방송 22.84%, 연합뉴스TV 69.77%</li> <li>- 광주영어방송·YTN DMB·유원미디어(DMB): 100%</li> </ul>
부과시기	- 매년
납부기한	- 9월 30일, 11월 30일 부과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li> <li>-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li> <li>-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li> <li>-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li> <li>-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li> <li>-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li> <li>-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li> <li>-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li> <li>-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li> <li>- 방송통신광과 발전을 위한 지원</li> <li>-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운영 비용 지원</li> <li>-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li> <li>-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li> <li>-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li> <li>-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li> <li>-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li> <li>-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li> <li>-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li>-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한 융자 및 투자</li> </ul>
기타	

##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징수 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귀속 주체	- 공공기관 등: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00%)	
징수관련 법률	- 약사법 제8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과목적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부과대상	- 생산 또는 수입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에 공급한 완제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부과요율 (산정기준 및 부담률)	- 기본부담금: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1,000분의 1 이내의 일정비율: 0.027%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품목별 생산액 등×품목별 계수*×부담금 부과요율 * ① 일반의약품 0.1, ②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0.6, ③ ②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1.0 - 추가부담금: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액의 100분의 25: 25% ·피해구제급여액×100분의 25	
가산금 등	가산금	-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
	강제징수 절차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감면요건	- 해당없음	
부과시기	- 연 2회(1월, 7월)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30일	
사용용도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기타		



##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17.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17. 내부자료.
- 송하성·곽채기·나상민. 2007. 부담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사)경기미래 발전연구원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 2007.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 \_\_\_\_\_. 2011.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
- \_\_\_\_\_. 2015.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
- OECD. 2012. “Livestock Diseases: preven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schemes.”
- OECD. 2010. “Managing animal diseases risk: incentives and governance of external effects.” OECD Workshop on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Paris.
- <인터넷 자료>
- 기획재정부([http://investpool.go.kr/kor/policy/fiscal\\_policy/budget/view02.jsp](http://investpool.go.kr/kor/policy/fiscal_policy/budget/view02.jsp), 2017.11.20.)
- 네덜란드 기업지원총국(<https://www.rvo.nl/onderwerpen/agrarisch-ondernemen/dieren/dierziektepreventie/diergezondheidsfonds/pluimvee>, 2018.02.27.)
- 네덜란드 정부(<https://www.rvo.nl/sites/default/files/2017/11/Overzicht-omloopsnelheden-pluimvee.pdf>, 2018.02.26.)
- 네이버 지식백과(<https://namu.wiki/w/%EB%B6%84%EB%8B%B4%EA%B8%88>, 2017.11.20.)
-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1000000501>, 2017.12.18.)
- 영국 정부(<https://www.gov.uk/guidance/compensation-for-animals-culled-to-control-animal-diseases>, 2018.03.01.)
- 일본가축방역호조기금 요강([www.maff.go.kr](http://www.maff.go.kr))
- 일본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http://www.inspection.gc.ca/animals/terrestrial-animals/diseases/compensation/eng/1313712524829/1313712773700>, 2018.03.01.)
- 캐나다 법무부(<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4-150/index.html>, 2018.03.01.)